

일시 1957년7월26일(단기4290년) 상오10시25분

의사일정

1. 적십자회비징수에대한조사보고처리의견
2. 「유엔」군의수도사용료청산에관한질의의견
3. 일반차량및버스에대한건의안
4. 경기여자고등학교부속건물개축에의한철거에관한건
5. 단기4290년도주택건설사업에수반한주택건설자금기채에관한건
6. 시유재산취득의견
7. 서울특별시공사의도급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대차운반에관한조례개정안
8. 흑석동공인시장및연지시장에관한청원서심의의견

부의된안건

1. 적십자회비징수에대한조사보고처리의견 10면
2. 「유엔」군의수도사용료청산에관한질의의견 26면
3. 일반차량및버스에대한건의안 36면
4. 경기여자고등학교부속건물개축에의한철거에관한건 46면
5. 단기4290년도주택건설사업에수반한주택건설자금기채에관한건 48면
6. 시유재산취득의견 51면
7. 서울특별시공사의도급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대차운반에관한조례개정안 68면

8. 흑석동공인시장및연지시장에관한청원서심의의견 98면

(10시 25분 개의)

○부의장 이행득; 재석의원 25인으로서 제3회임시회체3차회의를 개최합니다. 제2차회의록 낭독이있겠습니다.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한것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습니다.

회의록서명위원으로 박수형 김동순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김항복의원으로부터 일신상사정으로인해서 7월26일 27일 양일간 청가원을 제출하여왔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정조례 제정에건입니다.

7월2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흡 의원 ; 잠깐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김제윤의원이 회계검사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거기에대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그처리위원회라고하는것은 각분과위원회에서 한분씩을 선출해서 그분들이되어서 뒤처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어느분이 이처리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안들어왔습니다.

반드시 본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폐회하기전에 처리위원회를 완전히 구성을해가지고 명

단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것이 순서이기때문에 대략 오늘 오후면 폐회가될듯하니 여러위원장께서는 각분과위원중에서 한 분씩 선출해서 편리상 본의원에게 보고해주십시오. 그러면 어제오후에 명단을 발표하고 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강을순 의원; 본의원이 말씀을 하지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알할도리가 없습니다.

경찰국의 보안과 청소부정사건에있어서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집행부로서여금 여기에 보고가 있을것이라고 보았습니다마는 전차회의에도 오늘로서 폐회가될 예정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될사항입니다.

서울시비로서 세출로서 나간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횡령내지 착복했다는 사실자체를 의회에 보고하지않는 그점을 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의장님께서 관계국과 연락을해서 오늘 폐회전에는 반드시 보안과부정사건을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또한 따라서 동대문구청에 현재 부정사건으로인하여 수사과에 수사를하고있읍니다마는 사건자체는 보고할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 5, 6명이 현재 구속중에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을 보고하자는 못하지만 어떠한이유로서 피검되었다는 사실을겸해서 보고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의장님께서는 요 두가지에있어서 폐회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하여 주시기를 부탁해서 한가지 보고해주는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연락하겠습니다.

○노승환 의원; 전차회의당시에도 산업분과위원장이신 김규

원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근자에 이러한 문제가 보고사항으로도 나온바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방공무원의 양곡배급에대한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아마 이것은 서울특별시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끼치리라고보고 또 예산내지 자본금사정으로인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자에 서울특별시산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생활난에 많은 고충내지 생활고로인해서 비애를 연출한다고하는것만은 자타가 부인하지못할 사실일것입니다.

근자 서울특별시산하 지방공무원에있어서는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진술에 의거한다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농림부로부터 양곡배급을 현재까지 타오지못한다는 이러한사정의말씀도 잘알고있는 사실이겠지만 단한가지 국비로서 지출할수있는 국가공무원은 6월까지 현재 배급이 완료되어있다고 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러나 요 2, 3일전에 지방공무원은 4월달치만이 배급이되어있다고하면 5, 6, 7, 3개월이상의 양곡배급을 아직 미수료중에있다는것을 전차회의당시에 산업위원장께서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속한일자내에 지방공무원의 양곡배급이 순조로히 잘될것이라하는 이러한 보고의 말씀을 하신바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에 양곡배급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의 그가정에 비애를 연출한다는 가지각색의 문제가 오늘날에있다고 하는 문제에비추어서 집행부관계책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더한층 유의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하고 동시에 국가공무원에있어서는 6월달치까지 배급을주면서 지방공무원은 2, 3일전에 4월달치를주는데 소맥분을 주는것같습니다.

이점을 현재 지방공무원으로서는 말못할사정이고 가정에 비애를 느끼는동시에 누구에게 말할수없는 이러한 사정에 놓

여있다는것을 본의원도 수차 들은일이있습니다.

금일만하드라도 지방공무원이신 여러제씨에서 본의원을 붙들고 이러한말을 호소한바있어서 말씀드릴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지방공무원의 양곡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러한문제는 급속한 기일내에 해결해줄수있는것을 요망하는 동시에 지방공무원의사정 내지 지방공무원의 가정실정과 모든 비애를 느낄수있는 이러한 비참한 사정에있다고하는것을 현재의 지방공무원되시는 여러분이 호소하고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러한문제를 하루속히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이 해결할수있는 방도로서 속한 기일내에 해결해주시기를 요망하는바이올시다.

이상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그것은 어떤시기에 집행부에 질의하시는것이 낱줄입니다.

○박수형 의원; 서울특별시 집행당국이 여러가지행정을 집행하는데있어서 나쁘게말하면 되어먹지않었다는것이 정평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되어먹지않은 처사가요 근자에 또다시 발생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하니 듣는바에의하게되는 서울시산하의 임시직원이 약2천5백명되는데 이것을 또한 절반 줄인다는 소문이 돌리는것에요. 이소문이 퍼지니까 각구청의 징수와 혹은 호적병무과등등에 근무하는 그분들이 대우개선이되어서 만5천환정도받는것도 아주못받게 되고 쫓겨나간다고해서 전전경경하는 태도로서 불안한 살림사리를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시당국이 오늘날에와서 임시직원은 2천5백명이나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줄이지않으면 안된다고 말할자면 무엇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임시직원을 많이 채용해놓았느냐하는

그문제예요. 다른말은 필요없습니다마는 그래 독일의 「히틀러」 같은사람도 독일국민은 고사하고 가로수 하나하나 산에 서있는 나무까지도 키워가지고 그가로수내지는 산림자체에 대하여 쓰는 성격이라고할까 무엇이라고할까 이것까지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데 이나라에서는 제아무리 모든것이 궤도에 오르지않고 임시조치로서 했다고 할지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임시직원 자기가 처자를데리고 한가족을 거나리고있는 이분들을 언제는 채용하고 언제는 그사람들의 일자리가있든없든 목아지를 잘러버린다는 것은 말이안된다 말예요. 내생각같어서는 이러한 불상한 임시직원은 그분들이 채용당할적에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에 걸쳐서 고관대직을 찾아 다니든지 명함을 받아간다 해가지고 겨우 채용되었다 그것예요. 채용되어서 1년여 혹은 2년이 못되어 감원한다는것은 도대체 말이안되다 말예요. 또 시당국의 정책으로서 재정형편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밀에 부쳐가지고 그공로를 가져가지고 차래차래로 할것이지 이것을 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언제 목아지가 달아날지모르니……. 해서 부정을 마음대로하고 사무를 태만히하고 민원서류취급을 태만히하므로 말미아마 한시간갈 것이 두시간가는 이런 상태에있다 말예요. 이러니 제생각같어서는 이불상한 임시직원만가지고 감원할것이야니라 도리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중에 비행이 있다든가 불성실한사람들이 얼마든지있다 말예요. 이런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임시직원으로서 대체하는 이런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예요. 이것 작란하는것이라 말예요. 언제는 채용을 하고말예요. 징수과나 호적과같은데는 인원이 모자라서 일이안된다는 오늘날에있어 무엇을 어떻게한다 말예요.

집행부는 좀 궤도에오른 행정을 해달라고하는것을 말씀드

리는 동시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보고사항없습니까?

○김재광 의원; 지금 보고시간이라고해서 각양각색의 지나간 흐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저편을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해서 말할 흥미를 느끼지 않는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회가 문이열려서 하나의 국민복을 포착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사실을 안다고하면 집행부당무자들은 빠짐없이 이자리에 참석하셔서 과연 시민의 소리가 무엇이며 회구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할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직각집행부 여러당무자를 이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조요 해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지금 집행부 최고 장은 신문기자들과 회견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견이있기때문에 이자리에 참석하지못하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추후에는 연락해서 그렇게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길 의원; 본의원이 여기에 보고드리고저하는 이유는 재정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매주수요일날 「시민위안의밤」이라고해서 서울운동장에서 공연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여러분이나 이사람이나 다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당히 운동장이라고보면 시유재산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로하여금 의당히 이자리에 나와서 이것이 서울시주최인지 또는 대한민국전체의 주최인지 이것을 집행부가 의당히 나와서 설명했어야될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의장

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의장님께 연락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그것을 나와서 말씀해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문제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보고사항 또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배부된 일람표의 안전보다 벌써 긴급동의안 낸지가 10여일된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긴급동의안 제출한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날자가 지연되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안전은 「유엔」 군 수도사용료 청산에 관한 질의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 의원; 「유엔」 군이 사용하고있는 수도사용료 이에 대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야만할 금액이 5억9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지금 있음에 비추어 서울시로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이나하는 여기에대한 골자를 포함함 동의안입니다.

여러의원들이 혹 생각하기를 「유엔」 군이라 했으니까 한개의 국가와 국가가 해결을 문제이지 서울시만 단독 해결할문제이나 하는것을 일응 생각하는것은 무리아닐것으로 본의원도 믿어가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책정된 수도사용료 미수로 말미아마 미치는 서울시예산면의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기때문에 이것을 질의하고 나가서 받아놓지않으면 이다음에 어떠한 과오가 초래될까 두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얘기도중인데 여기에대해서 누가 나와계십니까?

○부의장 이행득; 수도과장이 나와있는데…….

○김제윤 의원; (계속) 사용료를 왜지금까지 못하느냐 그정도가 아니에요.

(「다음에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내무국장도 나와야되겠어요. 기자회견은 왜 각국장까지 다하나?…….

○부의장 이행득; 질의하는것을 적어두었다가 책임자가 답변하도록 적어두세요. 지금 곧 연결하겠습니다.

○김제윤 의원; (계속) 가만이세요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해가지고 하는것이 어때요. 문교위원회에서 바로이것을 집행할도리가있다고하면 말씀이지요. 5항에 경기여자고등학교의 건물관계 요것을 올린다음에 이것을 본의원이 제안요지를 설명할까요.

(「좋소」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장을순 의원; 의사진행을 속히 하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답변듣는데 반대는안합니다마는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어저께 적십자회비 처리관계를 의사일정변경동의 낸것이 있습니다.

간단한것일것입니다.

이것을 먼저하고 다른 안건을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석에 아무도없습니다.

기다려야하니까 의장님께서 그점을 양해하셔서 적십자회비는 집행부가 없어도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아까 긴급동의안을 상정할것을 취소하고 의사일정변경한 긴급동의안으로 적십자회비 징수 사항조사보고에 대하여 처리코저함에 의사일정변경할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상정합니다.

1. 적십자회비징수에대한조사보고처리의견

○최인호 의원; 적십자회비 징수 방법에 있어서에 구속력을 가할수있는 하등의 법적 근거없이 하년의 관권을 발동해서 불법적인 임무를 이행케강행했다는 확실한것을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받는 이것을 여하히 처리해야 할것이나 하는데에 있어서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시한것입니다.

방법으로 드러가기전에 제가한만큼 드러고저 하는것은 첫째 각구 동 여기에 임해서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확실히 여기에 있는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싶이 개인에게 기채하여 입체하거나 동장의 사재 등등으로서 납부 기간내에 적십자회비를 납부한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장이니 동장이 물론 그책임이 있겠지 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무국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내무국장님 하나의 직권을 가지고 이것이 기한내에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납부를 하지않으면 앓된다는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 여기에 의해서 집행장에있는 구청장이나 동장이 어쩔수없이 불가피한 이유로서 이러한 불미한 일을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의 소행으로 말미아마서 동장이나 구청장

이 하나의 임무 아닌 임무를 이행케했다 이런결과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기직무에 임무를 이행할수 없는 임무를 했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형사상 문제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임무를 강행시켰다면 이것은 형사상 문제입니다.

구속력을 가할수없는 구속력을 가했다는 이결과는 누구에 책임이냐하면 내무국장에 책임이 있다는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건에대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자기직권을 남용한 내무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이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처결하기위해서는 처리방법으로 이미 우리가 원의로서 회계검사 처리위원회를 구성한것이 있습니다.

이위원회에 이것을 위임해서 처리하자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동의를 하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이 적십자회비로 말미아마 조사하신의원에게 보고의 말씀을 들였으면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모든부면에 있어서.....이 징수 방법에 있어서 졸렬하니 하는것이 하나의 결함인것입니다. 하니 다른 각도를 좀달리해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위해서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실무에 월권 행위다 인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분이 계십니다.

나는 이인권을 박탈하면서 받는 그 자체가 나쁘다 이말에요. 자기 임무를 갔다가 완수하는데있어서 자기의 직무가 실지면에 있어서 하두징수가 안되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그러한

명안을 한번 냈던것이 졸렬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추후에는 이런 일을하지말도록 해달라는 정도에 경고 정도로해서 이문제를 일단락을 하지않으면 오히려 간단하지않으면 오히려 간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사상 제몇조에 해당한다 안한다.

우리 자신이 논의할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집행을잘못하면 잘못된데에 대한것을 잘하도록 요청하는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회로서 집행부에 경고를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하지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이문제는 이정도로 일단락을 하는것이 좋지않을가 생각합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박수형 의원; 이 문제를 그냥 하나의말도 없이 종결지어 버린다고 하는것은 안될일입니다.

이미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해서 그징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졸렬하고도 악의적인 방법으로서 했다하는 그것이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사항에서 나타났던것입니다.

특히 그책임을 맡은동장이라든가 하급 관리들이 그책임을 완수하자고 해서 연시보같은것을 냈던것도 사실이고 또한 이자를 얻어서 이것을 보충하자고해서 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잡부금에 성격을 가진 적십자회비는 내무국장이 이것을 아무날까지 안내면 사직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하는것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야무야 그냥 넘긴다는것은 어저께 신문에 나고 전국민이 이사실을 알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최인호의원이 회계검사 처리위원회에 위임하자했는데 한위원회에다가 여러가지를 부담시킬수가없고 또한 김인기의원께서 이것을 이만한 정도로서 종결하는 이런말씀도 있었는데 본위원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내무국장 그수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정도라도할 심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반 행정면에 있어서 적십자회비 이것하나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것은 앞으로에 일을 생각해서 너무 경솔한 일이나닌가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원의로서 내무국장 관계 각 구청장이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원의로서 경고할것을 동의하는바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재순 의원; 방금 김인기의원이나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의원도 별다른 이의는없습니다마는 과연 결의다 혹은 경고다 여러가지 우리가 건의한 일이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동풍격입니다.

적십자회비 징수에 있어서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하나 성의를 표시 안한분이 없을것이며 마땅히 우리는 출선 납기일내에 밝힌다는것은 임무입니다.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차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왜하필 적십자회비 징수에 대해서만 심지어는 서약서까지 받아가며 기타 여러가지 공금을 이용까지 하면서 기일내에 밝히는 이러한 졸렬한 방법을 지시했느냐 이습관으로 말미아마서 이제 추후로 여러의원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많은 공금유용에 대해서 무어라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 문의를 우리가 간단히 처리한 문제가 아니고 작년 시정 감사시에도 적십자회비 징수에 대한 말이있었고 금년에도 특히 작년에 그것을갔다가 개선치못하고 금번 적십자회비 징수 방법에 공무원의인사건운운까지 해가지고 서약서를 받은그말 단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제가 여기서 끝까지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회로서 무슨일을 조사하려고 할적에 의회에 기능을 마비고 말단 공무원에게 비행을 조장시킨다하는 이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차드렸습니다.

무엇이나 할당받은 금액에있어서 정말 비행이 많다는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영수증도없고 회원권 이라는것은 배부한 예가 없습니다.

또한가지 완납된 적십자회비가 지금도 동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부상에도 완납시켜놓고 지금도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하려고하면 몇달걸려야 합니다.

또 어제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로 말미아 마서 제가 어떤분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심지어는 식량 조절 미에서까지 입체하는등 강행적으로 위협을해서 적십자회비를 받고있는 이러한 사실이있습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영달금 내장부정리도 안내놓고있다 말씀 이에요. 군경 원호회비도 매일받고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용한것 말단 동회에서 영달금을 유용하고등등을 불적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추후로 절대로 이런일이없기 위해서는 이번기회에 우리가 시정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동장 이하 동직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것은 이분들의 죄가 아닙니다.

번연히 사흘동안에 4천만원에 가까운 그 회비가 징수되지 않을줄 알면서 3 4일동안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징수시킨것이 뒤에도 이것이 납부되지않는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두고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47명 시의원들 여러분이 2백4십동회를 샅샅히 다녀서 잡부금 대장도 우리가 또한 시정시켜야 할것입니다.

현재 억망 진창입니다.

적십자회비 전부가 3천8백만원이라고 하지만은 3천8백만원 문제가 아니에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어제 여러분들께서들은 보고서를 보십시오. 몇동회를 조사한것만 비행이 나타났는데 비단 적십자회비뿐만 아니라 군경원호비도 우리가 일단 시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가지고 사후 처리에있어서는 특별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렇지않으면 내무분과위원회에 매껴서 또처리를 시키느냐 하여튼 이문제를 결과를 맺는처리 방법으로 여러분에 의결이 주시기를 비는바입니다.

○신사회 의원; 본건에 대해서 물론 이처리안에 있어서 간단히 또한 시간을 허비하지않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말씀을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이것이 일방적이 되지 않는가하는 이런감이듭니다.

물론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몇개동회에 철두철모 조사를 잘하셔서 보고사항을 우리의원으로서 시인하고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는 집행부에서도 담당자의 의견서가 여기에 첨부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게도 책임자의 답을듣고 이처리안을 결

정을해야지 우리 의원들에 조사보고만 듣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리한다 경고문을 내다하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감도 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의원간에 조사가 있었으니까 집행부에 답을듣고 처리해주는것이 순서가 아닌가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영석 의원; 이 문제가 제일에 긴급동의로 채택이되어서 상당히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또 질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 의사를 간파한바 있는것입니다.

문제를 세금도 아나 잡부금에 강제로 징수가되고 징수한 이면에는 여러가지 불미한 사태가 많이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알고있는것입니다.

좀더 정확을 기하고 세밀히 알기위해서 내무위원회에 조사를 일임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조사보고를 우리는 또한 접수한 바있습니다.

집행부 의사를 듣는다거나 어떠한일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만을 보고했자 조사하는 당무자로서 의견이 조금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사한 내무분과위원회에 의사를 들어서 그 의사에 결과를 우리는 참작해서 여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가장절차있는 처리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결과 내무위원회에 조사보고와 동시에 내무분과위원에 조사보고와 동시에 내무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여기에 말씀해 주실것을 의장을 통해서 부탁하는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조영석의원의 말씀과같이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을순 의원; 이제 적십자회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에 만족치못한 이런 감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제가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를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지않았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의원에게 위임 사무를 조사보고만 하라고 하기때문에 보고에 그친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소견을 말씀하려고 한다면 일종에 적십자회비는 잡부금이 올시다.

또한 문제가 달라지는것 같습니다마는 군경원호회비도 이것과 동등한 성격을 지금 띠우고있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조사를 다못하였읍니다마는 몇개 구청을 조사해보니 집행부에서는 공한을 보내가지고 했기때문에 실질적이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고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은 선의로 해석합니다만도 그날 본회의에서 위임되어가지고 즉시 그시간에 공한을 보냈읍니다.

그 공한 내용을 저번에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것이니까 말씀안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날조사를 못하였습니다.

처음 일개동회에서 서류를 가지고 왔읍니다.

또한 그 기한내에 25일까지 선을 그어왔다는 채무과장의 어떠한 의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항간에는 상금을 타기위해서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읍니다.

상금을 탄다하는것만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기에 개인욕망 또한 공무원에 충성심이라고 할까

또한 상부에 아부하려고 한다는 이런것이 역력히 나타났다는 것이 과언이 아닌것입니다.

말단의 일개동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개인의 수표를 얻으러다니는데 머리를 쥐였대요 말단에있는 동장 얘기를 들으면 동정을 아니할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구청에 관계직원이 와서살고있다 그말이에요. 별 도리가 없기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했다 말단동장까지는 그러한 동정을 할 의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구청……. 어디라고 지적하겠습니까……. 서대문구청 채무과장이 개인의 돈이 어디서났는지 모르겠습니까마는 40만원을 자기 개인이 입차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섯가지 동 사무비로 나가는 40여만원 이것도 여기에 기채해 가지고 30일까지 납부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5일까지 다 납부해라 그렇게 동에 지시를 했기때문에 동에서 25일날 만드러 가지고왔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동정할는지 모르되 2, 4반기 사무비가 일부나가는 영달금에 기채했다.

여러분이 다아시다싶이 동사무행정을 충분히 보시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조사서에도 엄연히 나타나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3천5백만원의 전체 적십자회비를 구청에서……. 예를 들어말씀 들이자면 1천만원 배당이 되었으면 각동에 1천백만원 1천2백만원 이렇게 다늘여났습니다.

이것에 전체에 액면을 보자면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말단에 조정액을 보자면 수천만원이 올읍니다.

이것을 갔다가 그날까지 끝내고 전체에 금액만끝낸 동회도 있고 현재까지 받는동회도 있습니다.

무질서 무계획적인 징수방법을 지휘했다는 친애하는 시의

총무과장이 어떤의도에서 한지 모르니 선의로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단의 구청장을 협박강요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느구청에서는 몇일까지 적십자회비를 못내면 사표를 내라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박의원이동의해서 공사관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는 조그마한 공사도 못하고있습니다.

일선의 과장이 40 50만원이 어데서나서 입체하느냐 말인 것입니다.

그도 물어보고 싶지않어요. 오고말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따라서 여기에 말단에있는 하급관리에게는 하등의 죄는 없을뿐아니라 최소한도의 총무과장 서대문의 총무과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조치해주지않으면 앞으로에 있어서 여러가지 그러한 동등한 예로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무국장이 증언석상에서 강제로 징수조치한것은 없다 했습니다.

만약 강제로 징수를했다든지 영수증 서약서를 받은일이왔다면 관계지휘관은 엄중문초하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건에있어서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내무국장도 증언했으니까 원의에서 조사하라고해서 정확히 조사해라 조사보고서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내무국장도 사실그러한 일이없다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인사 조치하겠다는것이 속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의 지휘관을 어떤책임의 소재비가 없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김재광 의원; 김재광이 올시다.

금번논의된 적십자회비 강제징수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제안해서 이제 여러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하나의 문제가 시민으로 하여금 여론에 초점이 되어있는것만은 들림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것을 망각하고 공명심에 흠뻑해서 그러한 처사를 감행했다는것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한거름 나가서 사회의 경제면으로 고찰하건데 금융에 대한 처무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로 하여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앞으로 있어서 시민으로 하여금 납득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명의 길을 우선열어야겠습니다.

최초에 있어서 시민앞에 존중히 저지른 과정에 대해서 마땅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실무담당자는 여기에 책임을지고 물러가든가 不然이면 시의책임자로 하여금 인사를 감행해야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은 마땅히 시민앞에 사과와 아울러 유감의 의사를 표시할것과 담당실무자에 대한 문제는 인사조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의의 요지로서 대하고자 하는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재광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이 있음)

○김수길 의원; 김수길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있는 시세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잡부금의 성질을 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않는 적십자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한 의도는 과연 적십자사 총재가 현재 우리 이대통령인 까닭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기우한 나머지 유지하기위하여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징수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지사라 아니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해볼때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오는 일을 생각해볼때 신중을 기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이니만큼 또한 적십자회비 자체가 세계각국에 공통되어서 징수하는 국제적인 문제니만큼 이번만은 부시장 내무국장은 시민앞에 징수방법이 그야말로 불법적이고 강제적이였다는것을 사과하고 각구청장에 대해서는 경고하자는 의미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동석 의원; 방동석이올시다.

김재광의원의 개의를 듣고보니 近似한것같어서 개의취지에 찬성을 표하려합니다.

본조사단의 보고에의한다면 그조사단의 결론에있어서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해서 부당한압력을 가함으로 말미아마 각자의 무리가 발생되었습니다.

조사단의 보고서에 처리까지를 결론에 제시되어 있는 이상 내무국장은 해당책임을 져야하며 우리의회는 조사보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야할것입니다.

제반사정에 근거를두고 주무국장 내지 부시장께서는 여기에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사과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면을 통하여 각자의 여죄를 다시금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상징으로서 인사조치를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면서 본건을 처리해야 될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정태희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태희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것을 보니까 세밀히 잘해서 대단히 저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러한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했지만 제 주견에 대한것을 나는 말씀좀 들을까해서 나와서 말씀 들이는바입니다.

또 이사람은 개의자동의에다 찬성하고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처사에 대해서는 불가불 개의의 정신을 해야겠는데 그러기때문에 찬성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왕지난일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입장에서로는 개의동의를 찬성하고싶습니다.

일만은 국제적사업인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에대해서 이렇다는것을 보기위해서는 적십자회의 일이 훌륭한 성적으로 나가지않으면 안된다는 주동적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통령께서도 제창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긴요하게 잘 해나가자는 것을 역설했고 관하 산하 단체에도 명령한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지난시대에 적십자회로 했고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적십자회를 해가는것을 보니까 역시 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일을 했느냐는 것도 감상에 느껴집니다.

일제시대때의 정치는 강력한 정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사업인 적십자사업이 잘않되어서 고심천만해서 이사람도 일찍이 강제적으로 권하는데 의해서 적십자회회원이 되어서 내고싶지 않은 적십자회비를 낸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깊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때 별수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냈든것입니다.

은매달이라고해서 위원에게는 빨간납끈에 달아서 주기도했고 표창도 내보내주어서 받아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정치인 것입니다.

상납금에대한 시세조차도 행치 않아서 곤란한데다가 적십자회비를 강징하기는 곤란할것입니다.

국제적사업인 일은 해야할것은 사실이니 적십자회에대한 기금만은 사비를 내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말씀 않들이니 일이 안된만큼 일은 되도록 해야하므로해서 그러한 수단까지도 냈습니다.

일만은 잘되었습니다. 하나 수단과 방법만 들였습니다.

박수형의원의 말씀에 대단히 찬동하니 경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제 의견으로생각했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김재광의원의 개의 내무국장이하 책임을 전적으로지고 인사조치를 해야한다는 개의입니다.

가타는분 거수해주십시오.

내리십시오.

동의를 이다음부터는 그러한일이 없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재석의원 33인중 박수형의 동의에 가타는분이 1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동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하는이 있음)

(「동의요지를 확실히 밝히시다」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동의는 차후는 그러한일이 없도록 경고하자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라는 것입니까」하는이 있음)

○김수길 의원; 이사람이 나와서 동의에 대한 찬동발언을 했습니다.

그요지는 부시장 내무국장이……. 회비징수방법이 졸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앞에 사과하고 구청장에게 대해서는 경고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줄 알아주십시오.

○부시장 이행득; 그러면 김수길의원의 동의…….

○박수형 의원; 동의의요지가 부시장이 직접책임을지고 내무국장에게 앞으로 그러한일이 없도록 하라고했는데 찬성자는 김수길의원이 앞으로 그러한일이 없겠다는 사과를 시키자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부시장 이행득; 다음은“유엔”군의 수도사용료청산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광 의원; 하나의 원의로서 결정된사항을 통과된이후에 다시 뒤바꾼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의장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인기 의원; 이 문제는 제가먼저 발언을 해가지고 박수형 의원이 찬성발언을해서 동의되었습니다.

원칙은 의회로서는 경고는 집행부 의장에게 내야합니다.

부하보조기관에 경고안을 낸다는것은 우리의회권위를 실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말씀 들일때 이정도는 시일을 끌어가지고 논의되었으니만큼 집행부로 하여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이다음부터는 이경고에 대한 것은 어데까지나 시장을 상대로 해야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아까 말씀을들었습니다.

○김경원 의원; 김경원이 올시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대단히혼란하니……. 시방 김재광의원이 말씀하는것이 박수형의원이 동의한 요지와 나중에 김수길의

원이 나와서 동의한 요지가 약간 다른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동의한 박수형의원에대한 속기록을 낭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수형의원에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애매하니 속기록낭독하면 아무문제없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녹음을 들읍니다.

○김규원 의원; 의사진행상 자꾸 혼란한것 같아서 좀나왔습니다.

녹음을 다시들라하는 것은 몇일 지난후에 녹음을 들어 기억을 새로히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다같이 들었습니다.

녹음다시 들을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어데서 이러났느냐하면 김경원의원이 말씀한데로 김수길의원이 나와서 약간 첨가하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의장이 박수형의원께서 받아들인것을 선언했습니다.

받아들이는것으로 안건은 가결되어서 의사봉을 친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재론할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종결시키고 요다음 둘째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가지고 혼란을 이르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사실이 없으니까 말예요. 또의장이 확실히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다는말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론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녹음을 들어서 여러분의 의혹을 풀어들이려고 합니다.

(녹음을 재생방송하다)

다음에 수도사용료 청산에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엔」 군의수도사용료청산에관한질의의견

○김제윤 의원; 먼저 이말씀도중 이것이 중단이되서 다른안건이 되있어서 좀 어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서론한얘기는 생략하고 주문말씀 들일려고 합니다.

지난……. 기억하기로는 5월8일날자에 전김부흥부장관과 미극동군사원조고문단장인 「카-드」 소장간에 유엔군이 사용하고있는 전반에관한 사용료에 대해가지고 좋은방향으로 순조롭게 해결책이 다 된다는보도에 접했을때 본의원이 본서울특별시에 관련되는 수도요금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경우에 대한 여러가지 각도를 생각해왔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말씀들이고저 하는것은 이사용료를 청산하려는 원칙은 잘되었다고 보는데 문제가되는 부수조건에 있어서 즉 청산기일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중에 있다는 이런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이미해결중에 있는 날자로 말미아마 우리전체수도서울시 행정에 미치는영향이 불소한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문제가 예산면까지 파급되었기때문에 내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골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받아들일수있는 수도요금 지금까지 연체되었고 금년도1억2천만원 책정해서 84년도부터 오늘날까지 5억9천만원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인천에 보낸 1억5천만원중에 6할을 유엔군에서 사용하고있다고해서 인천에서 못받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행정면에 예산책정된것은 84년도부터 이것이 책정되 내려온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측에서는 도저히 84년부터 응할도리가 없다.

이것은 휴전협정후에 즉 86년부터 날자를 계산하자고해서 미해결중에 있다는말을 들었는데 그후에 어떤각도로 되가는 지 미지수에 있는것입니다.

실제결과는 무엇이냐 적어도 2년간에 84년과 86년문제라면 2년의차이가 나오는데 2년간의 수도요금은 물경 2억환이란 것이 산출되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경전에 미치는 영향예요. 왜 경전에서는 84년부터 책정한범위로서 원동료를 경전에다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엔군에서 생각하는데로 하면 간격 2억환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것이 의문상되는거예요. 한개 한개 따지자면 지금 유엔군한테 받을수있는 수도요금이 청산안되는 관계로해서 일반회계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세를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또하나는 도로손상세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들이..... 의회가 구성되리라고 생각이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전보대를 도로에다 세움으로서 이에대해서 받을 사용료가 있는것입니다.

또하나는 양은철로 만들어놓은 매표소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용료도 능히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서 이런사용료를 못받고있는 것은 수도료가 해결안되므로 못받고 못하고 있는거예요.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이 여기서 크게 느끼는것은 뭇이냐 이렇게된다면 유엔군한테 받을돈을 못받는고로 말미아마 도로손상세라든지 교통세 도로점령사용세를 못받는것은 시민에 영향이 갈수있는 다른 공사를 해야하는데..... 송수관이 대단히 파열이

되가지고 있어서 물이 새내려간다. 하수도관이 터져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이돈을 받아들임으로서 해야하는데 이것이 미해결중에 있어서 중지상태에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런등등으로 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물론 국가대국가 문제라고 할지언정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서 내무부와 유엔군측과 절충하고 있으며 그결과는 어느정도 좋은 %를 내놓고있는가 그런결과로 나오는 결손관계는 어떻게 보충할것이며 경전관계는 어떻게 타결할것인가를 서울특별시재정면을 생각한남어지 이런것을 걱정안할수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해서 집행부에서 알아볼라고 하는것이며 이답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있을결로 믿어져서 첨가해서 물어보고져 하는것은 지금 요소요소에 약180개소라는 양철로 만든 매표소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치하는 규정이 서가지고 허가가 나가서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설치하는 규정은 항상 까닥하면 설치국에서 내놓고있는 조선총독부 시가지령같은데 위배안되는가 물론 얼른얘기하면 시민이 타고다니는 전차다 시민의 공기다 또 시민이 어느곳에서나 탈수있게 하기위해서 만든것인데 무슨 의심을 가질수있는 것이냐 할지 모르지만 일정한절차를 만들어서 할수있는가 그렇다면 빠쓰라도 그런것을 만들수 있지 않은가 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제안한 몇가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제윤의원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마침 아침에 오이씨측과 내무부와 회의가있고 또 기자회견이 있어서 아침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군 수도료문제는 해방후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엔군에 주는 수도조정량이 하루 1만2천屯씩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한달평균해서 33만屯 이것을 지금현재로서는 유엔군산하의 각부대 또한본부 어디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싸인을 받아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울특별시조례로 결정된 한입방매도루당 70환 계산을 해가지고 6월말일까지 약6억환을 현재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저간에 내무부와 부흥부 또한 8군과 몇차례 회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후에 부흥부에서 내무부에 이관해가지고 유엔군담당자와 직접 절충을 하도록 되있어서 그당시는 서울특별시 수도도 두차례나 회합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엔군측에서는 대한민국전체에 걸쳐서 각도시의 수도료를 일괄해서 내무부에 돈을줄테니 내무부에서는 각도시에 분배하라는 이런얘기입니다.

또한 여기대한 시기로 말할것같으면 4286년10월2일부터 기산을 하자 이런얘기 입니다.

즉 휴전협정성립된 이후부터는 내겠다는 이런얘기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네년도로 쳐서 57년6월20일까지 하고 금년7월1일부터는 매달 조절을 해서 매달돈을 내겠다는 요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후에 내무부에서 유엔군과 수차에 걸쳐서 회합을 하는 사무적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첫째 우리는 70환 인천은 75환 대구는 65환 부산은 55환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일괄해가지고 내무부와 단가를 결정

하기로 되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86년10월1일부터 물겠다.

또한 내무부에 일괄해서 날테니 내무부에서 각도시에 분배하는 원칙은 거의합의를 본것같습니다.

확실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7월1일부터 매월돈을 내겠다 이런것에는 계약서가 되서 싸인단계에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따라서 저희들이 인천에 물을 공급하는것이 우리가 하루에 3만7천톤해가지고 6월말일까지 밀린돈이 2억4천8백만원 이것도 이문제가 해결되므로해서 같이 해결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갈래로 나누어서 7월1일부터 물겠다는것은 거의 싸인단계에 들어가있고 또한 4289년10월1일부터 금년6월말일까지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 단가조절에 대해서는 평균단가로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은 55환에 되든지 60환에 되든지 확실한것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6년이 아니고……. 그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후 내무부에 전화로 들으니까 근일 통첩이 결정되서 나갈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도를 제작하기위한 경전에대한 전력료는 6월말까지 현재 6억9천만원의 우리가 내야될돈이 밀려 있습니다.

그외에 최근에 경전에서 차표팔기위해서 각도로상에 박스를 만들어놓고있는데 각구청에서 조사해서 도로사용료로서 현재 걸고있습니다.

중구 등지에서는 사용료를 책정해서 보고서가 들어온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빼놓지않고 꼭꼭 다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상 진행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전주값은 다받고있습니다.

현재 돈을받고있지만 우리가 줄것이 있어서 계산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건설국장 답변이 처음에는 86년10월1일부터 라고 말씀하시다가 수도권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정정해서 88년10월1일부터 기산해가지고 금년6월말일까지 기간을 잘러가지고 절충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8년10월1일부터 기산을 한다면 88년9월말일까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그동안에 해결을 지었나 88년9월말일까지의 수도요금을 그냥 내버려두고 10월1일까지 중간에 수도요금을 계산하게 될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8년9월말일까지의 수도료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되었다든지 그런말씀을 다시 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7월1일부터 매월징수하기로 되었다면 이전 기히 과거에 수도요금이 해결이 말하자면 절충이 안되더라도 7월1일부터 징수를 하시게 되든지 또 7월1일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그징수하는 금액은 대개 어떻게 결정한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도요금이 우리서울시의회가 구성되기전에도 왕왕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있읍니다마는 이막대한 6억환이라고하면 우리서울시비에 상당한 영향을주는 거대한 금액을 몇해가 가도록 칠락 팔락 해결이 안되니 서울특별시에서 성의가 부족해서 안되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전국적인문제니까

유엔군과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는것인지 그렇게 하다가는 명짚은 사람은 해결되는것도 못보고 죽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야지 이런일을 앞으로 더 계속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 의원; 본의원이 지금 대단히 지금 밀려있는 수도권 금때문에 여러각도로 시민전체가 이결로 말미아마 영향을 받고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나에 대하여 건설국장의 답변은 가뭄에 비를 내려주는감도 없지않어 있습니다마는 당무자인 국장이 답변하는것은 내가 이결 절차에 올려와 가지고 주무국장에게 여러가지 참고재료를 수집하기위해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장이 여기나와서 답변할려면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할터인데 여러분이 기우하고 있는것은 더러 드리겠다는 답변이 없다는것은 유감입니다.

또하다 걸핏하면말야 집행부에서 내미는 미관상에 안되었다고해서 판자집 철거운운이라든지 혹은 도시계획령이라든지 우리가 아직도 석연치 못해서 기회있을때마다 국회의원한테 항의하고있습니다마는 조선총독부 도로령이라든지 식민지 정책적인것에 구애받아서 시민이 얼마나 골치를 알고있는것이 아니에요. 이런것의 구애를 받고있고 내리미는 당무자라면 양철로 만들어논 매표소는 미관상에 걸리지않느냐 이런걸 답변해달하는거예요. 그래서 김규원의원께서 얘기한데 따라서 함께 얘기해주소.

○김수길 의원; 「유엔」군과 내무부 부흥부의 수도권에 대한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니만큼 이것은 과연 시가 내무부나 부흥부에대해서 어느정도로 위임을

했는가 요것 한마디 답변해주시고 또한 수도료에 관한한 해당 경비를 중앙에서 받고있는지 받지못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세째로는 우리수도료에 관해서는 적어도 시가 주동이니만큼 그회담에 참가해서 보조기관으로서 의당히 회담에 참가해가지고 자세한것을 내무부나 부흥부에게 보조기관으로서 참가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회담에 참가하고 있는지 앓하고 있는지 세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본건에 있어서 제안하신분 또한 여러의원께서 좋은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한 풍문에 들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미국국무성과 절충중에 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시재정면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줄 잘 압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더 개론하고 싶지 앓습니다마는 이제 건설국장의 두분질의에 답변듣고 본건을 종결했으면 좋을것 같아서 제가 동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느이 앓음)

재청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88년을 86년이라고 한것을 정정했습니다.

아까 86년이라고 한것은 제가 숫자를 환산할때에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문제는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해결을 보고있는데 김규원의원의 물으신 말씀에는 9월말일까지 즉 88년9월말일까지 금액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한 지금 내가 말씀드린것은 그회담에 두번 참가해보았습니

다.

서울시도 와서보라고해서 우리가 무슨 거기에대한 발언권은 없었고 내무부와 「유엔」군 담당자와 회합을 할때에 저희들이 가서 들은것 뿐입니다.

아직것 정식회담을 하니 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가차이 있으니까 와서 들으라고해서 거기에가서 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갈래로하여 88년10월1일부터 금년 6월말일까지 해주겠다고 하는것이 「유엔」군측의 제안입니다. 또한 한국정부측에서는 그것을 그렇게하자 마자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비회담하는 그경과를 여러분에게 보고드린것 뿐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결정한다는것은 아직 금액도 자세히 저희들이 모르고 그런데 근일중에 내무부에서 각도시에 통첩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첩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서 또한 아마 회담도 있을것같으니 그당시에 저희들이 안을 내서 또한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창할것을 주창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김제윤의원께서 법령문제인데 지금현재 아직까지 왜정하에 쓰든 법이 그대로 실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이법령을 제정해가지고 법제실에 들려서 국회에 내야합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계획법령뿐만 아니라 도로법 하천법 기타가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하니 이것은 작년초부터 내무부에서 이것을 법령을 개정하

기위하여 성안이 다되어서 현재 법제실에 가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전에서 차표를 팔기위해서 만든 이것은 거기에 도로앞대에 차표팔기위해서 세운다는 것을 먹기가 별로 먹기는 못한다.

도시미관상……. 이렇게하기는 좀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자리가 많은 면적도 아닌데 이것은 편의를 도모하면서 일반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저희들은 경전에 대해서 도로겸용료를 과하게됩니다.

이회담에 아까 김수길의원도 같은 말씀같은데 여기에 물론 50여개소가 있습니다.

각시 도시단위로 볼것같으면 50여군데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무슨회합이 있어야될것입니다.

지금현재 내무부의 통첩을 받은일은 없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때에 「유엔」군측에서 그것을 각도시별로 교섭을 하자니 대단히 번잡하니 내무부로 하여금 대표로 해서하자는 제안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아직 돈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근일중에 서울시에 통첩이 온다니 이통첩에 의지해서 회의를 하든지 결정을 했는지 이것은 未久에 알려질일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해결해야될것입니다.

그것은 지당한말씀인데 이것은 사무상으로 내무부와 회의를하자 이러한 내무부가 대표로해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저쪽의 제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물론 그 수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어도 반을 점령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주장할것이 앞으로 이런기회에 많이 나올줄 생각이됩니다.

내무부에서 확실한 통첩을 받지못한관계상……. 아무튼 7월1일부터 매달 주기로하고 그전의 것은 기한은 어떻게 되었든간 지금 주기로 결정한 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강을순의원의 질의종결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여쭙어보려고합니다.

4항을 먼저 간단한 문제라고해서 상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나왔기때문에 변경해서 일반차량 및 뺄스에 관한건의안을 먼저 상정하려고합니다.

(「좋소」하는이 있음)

3. 일반차량및뺄스에대한건의안

○김석근 의원; 지루하신데 변변치않은 문제를 가지고나와서 죄송합니다. 해도 좀 경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4월회의때에 제가 사고를 일으킨 보안과장한테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그후에 어떻게 그분이 잊어버렸는지 하나도 시행이 되지않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부딪치고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이문제를 건의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시민생활에 명랑화 시키는데 기여한다면 본건의안의 제안자로서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기를 다치고 있기때문에 제가4월달에 그런 질의를 하고 건의한것인데 도대체 도로를 포장했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혀여날수가없는 우리서울 시내 도로이기때문에 여기에

흙바지를 달라고했어요. 안달아요. 흙바지를 달어야 할것이 제일첫째이고 다음 영업용 「택시」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보시지만 구간제도로 되어있어서 차를타고 내려서 한4백환 줄것을 3백환에 백환더주면 끝나는데 장소 여하에 따라서 4백환 다주어도 조수가 뒤따라 내려와서 꿈무니를 쥐고 더내랍니다.

그런 불유쾌한 것을 우리 당하지 못하겠어요.

(「올소」하는이 있음)

동시에 왜놈들이 망할때에도 「매타」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보안과장 얘기도 한개에 3 4만환씩 드는데 시내 천여대에 이를테면 영업용차에대해서 막대한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되지않는 얘기에요. 왜그러냐하면 차한대에 2 3백만환씩 영업용에 5 6백만환인데 56만환 10만환짜리 「매타」기계산기를 하나 다는데 뭐이 그렇게 안되요. 이것을 하루빨리 함으로서 우리시민의 생활에 명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매타」기를 「장치」할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세재로 우리가 늘 뼈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뼈쓰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역과 가령 노근리간을 다니다하게되면 왕복에 한시간을 주어요. 그리고 왕복에 한시간에 가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아침저녁에 바쁠때에는 내리면 타고해서 바로가지면 아홉시가 지나서 저녁 여덟시에는 한정류장에서 2분 3분 아주지루하기 짝이없어요. 그래서 정류장에 대한 시간제를 없애는 동시에 거리에 의해서

5 「키로」라든지 3 「키로」라든지 그러면 숫자상으로 나올것입니다.

시간을 할해서 제정해주게되면 빠쓰운전수는 그시간내에 반드시 시발역에 돌아가야되니 중간에서 정류해가지고 일반한데 왜않가느냐 어서가자 이러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과가 특히 여기에 주의해가지고서 시간을 제정해서 그대로 실시하도록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빠스를 타게되면 조수차장이있는데 이사람들이 대개 국민학교는 못마춘 사람들이 많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이 요지음 곤란해서 전부신경이 아주 예민한데 가만이 보게되면 차장과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나하면 차장의 교양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운전수는 별문제로하고 승무원은 적어도 1주일내지 한10여일간 단기훈련을 시켜서 좀그렇지 않도록 해야되겠어요. 그러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노선하나 허가받은 사람이 한달에 택쓰한대에 대해서 소위 지입료 일본말로하면 「모찌꼬미」라고 해서 2만환씩에요. 지금 시내에 움직이고 있는 빠쓰가 약 6백여대 있어요. 그러면 2. 6. 12 한달에 근 천2백만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달에 부담하고 있는데 그 천2백만환이라고 하는것이 갈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잘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비용을 가지고서 승무원의 단기양성하는 기관을 갖다가 넉넉히 설치할수 있다고 보아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영업용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게되면 그방지책은 무엇이나 그러면 자가용이 지금 상당히 활발히 영업행위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관계당국에서 자가용의 영업을 갖다가 철저히 취체함으로서 모든 설비하는데에

대한 영업용의 비용은 충분히 보상되리라고보아서 앞으로 자가용 영업취체를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외빠쓰가 지금 약4백 현재 4백33대가 요새 허가가나서 한5백대로 봅니다.

그러면 이5백대가 하루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수원 인천등지는 하루에 몇왕복을해요? 이것을 하루에 3왕복을 본다고 하더라도 3 5 15 천5백회라고 하는것이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내의 교통량을 보세요. 원만한 횡단도로에 가서는 아주 밀밀듯이 자동차가 오기때문에 건너갈수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빠쓰의 시발역과 종점은 시내빠쓰의 시발역과 연결을 시켜서 시외빠쓰는 예컨데는 수원 인천방면에는 영등포방면에서 시발하게한다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손님이 바꾸어타고 시내로 들어오면 상당한 교통완화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갈아타느라고 손해가 있지않느냐고 하실것입니다.

손해하나도 없어요. 수원과 서울간의 운임이 있으니까 영등포에서 서울시내까지 들어오는 요금이 자연히 싸질것입니다.

그걸로 시내차를 바꾸어타고 들어올수있어요. 그러면 장거리손님이 단지 바꾸어타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으나 시내교통량을 갖다가 완화하는 데에서는 시외빠스를 갖다가 도심지외각선으로 시발역을 정하는것이 하나의 좋은방법이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시외빠쓰의 시발역은 시내빠쓰의 시종점과 연결시킬것을 건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요새 빠쓰가 차가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

렇게되면 요새 자동차취체규칙 이런걸 볼것같으면 운전수와 연대책임을 지운다 그래요. 그러니 사고낸 운전자든가 조수는 그야말로 취체규칙에 적용받지만 주인은 아무 책임이없어요. 손해났습니다.

그야말로 병원비라든가 위로해주는것 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연대책임이 되지않어요. 이연대책임을 지우는 방법의 하나는 취체규칙을 완전히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사고를 낸 차자체를 취체규칙범위내에서 10일이나 15일내 차 자체를 운행정지시킨다 말예요.

그러므로서 자동차주인이 정신을 버쩍 차려서 큰일났다 사고나게되면 보름놀게되니까 운전자 조심해라해서……. 그리고 운전수가 왜 사고를 일으키느냐? 여기에 운전업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운전수가 하루노동하는시간이 16시간이래요. 이사람이 기계냐 말예요.

그러면 손을 두어가지고 좀 교대를 해야하는데 그렇지못합니다.

또 운임이 싼것도 잘알고 있어요.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운전수와 차주의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본운행정지 이것을 갖다가 이용함으로써만이 운전수와 차주의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것이지 이제 말씀드린것 같이 부상하게 되면 부상당한 치료비나 주어가지고는 차주가 연대책임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자체를 10일이상 운행정지하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하지않어 가지고 지금 시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수십건 이것을 방지안해요. 그러니깐 건설국당국에서는 이상 건설한바는 신중히 고려해서 좀더 숫자적으로나 모든것을 잘 고려해서 모든 사고 기타를 방지하고 시민생활을 명랑히 하도록 하는데에 협력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에 영업용택시가 천6백50대가 있습니다.

빠쓰가 6백13대있어요. 그러면 빠쓰가 1할이 고장이 나서 못쓴다고 하더라도 5백4십여대가 된다말예요.

그리고 시외빠쓰가 4백43 약5백이란 말예요. 이러한 숫자가 매일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외빠쓰의 시발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외각선으로 정해야만이 교통완화가 될것을 본인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건의안이나마 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져 하는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조영석의원님 질의하고 계셨는데…….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제안자인 김석근께서 흠바지를 달자 택시요금을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매타」기를 달자 정차시간제를 명백히하자 종업원에대한 교양문제 그다음에 다섯째에 들어가서 시발점을 시외주차장과 연결시키자 또한 기타 사고차구류건등등이 나왔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함과 동시에 여기에다가 한가지 더 추가할려고 합니다.

추가하는데 전차회의에 본인이 말성을 일으켜서 교통경찰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것은 피차가 잘알고있는 바입니다.

그직후에 경찰국보안과에서는 각교통경찰한테 지시를 해서 택시운전수나 빠쓰운전수나 기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한테 대해서 불미한사건 내지는 취체할 일이 있다는것은 종전과같이 면허증이라든지 검사증을 빼앗는 일이 없고 명함을 그어서 경찰서에 오도록해라 이러한 지시를 내린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되어서 대단히 평도 좋았는데 요근자에 와서 들어보니 그지시는 어느정도 유야무야되고 역시 교통순

경은 검사증이나 면허증을 빼앗는 일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이 문제도 기왕에도 이것을 지시했었으니 일부경찰이 이것을 빼앗는 일이라든지 이런것이 없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조영석 의원; 이문제가 논의되니 본의원이 항상 관심을 가졌든 문제가 하나있었기 때문에 이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질의를하고 이것이 지금 건의한 내용에 첨가가되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의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어서 그야말로 혼란을 이루고있는 현상에 있는것입니다.

이것을 억제하기위해서 교통량을 완화시킨다고하는 하나의 미명밑에서 실지로 영업용 자가용 관용차에 대한 대수의 제한을 당국은 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한을 하고 단속하는 방법이 그다지 상책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타도에 그차적을 두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이러한 차량이 무수히 있는것입니다.

대개 본의원이 알아본 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경기도 또는 강원도등등에서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 약1천대 가량이 서울시내에 항상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1천대에 가까운 타도차량이 상시로 서울시내에서 疾走으로서 일층 번잡화시키고 있다는것이고 또 그반면에 이세금 도로손상금같은것을 일절 내고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차량이 실지로 서울시내의 도로를 손상시키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경기도에다가 납부하는 이러한 모순을 보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수가 극히 적은대수라고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1천대에 가까운 대수가 이러한 형태에 있는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1천대 가까운 이대수가 세금을 타도에다가 바치고 서울시 내의 도로를 손상시킨다고 하면 서울시로서는 그야말로 1년을 통산한다고하면 4 5천만원의 세금을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지로 당국이 교통량을 완화시킨다고 하는것은 이러한 목적하에서 이러한 대수제한을 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효과를 보지못하고있는 현실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당국자는 이러한 것을 좀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방법과 단속이 여의치 못한다고하면 거기에대한 도로손상금만이라도 서울시가 수입할수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항시 연구하고 또는 강구한 이러한 것이 당국자로 하여금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본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답변에 의해서 내용이 건의에 첨부될수 있다고 하면 첨가해주시기를 건의한 김석근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재순 의원; 저는 항시 이단상에 올라와서 영등포구 변두리시민에 대한 비애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이기회에 좀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뺨쓰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좀혜택을 입어볼까 하는 동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교통부로부터 뺨쓰의 노선을 허가를 얻어가지고 현재 시내각처에서 뺨쓰를 운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동 이두노선은 엄연히 관계당국

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뺨쓰를 운행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가까이 뺨쓰는 안다니고 택시……. 허가도 받지않은 자가용 혹은 영업용 택시가 합승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엄연히 매일같이 뺨쓰가 나가야할 것을 뺨쓰가 앓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관리과장 이하 각요로에 수차 말씀드려서 이관리과로 하여금 진실로 성의있는 알선을 해주었고 운수조합에서 상당한 건의를 한것같습니다마는 하로 이들은 몇대다니고 현재는 교통순경이 서서 감독하면 한대도 다닙니다마는 영등포구내에 12만명에 가까운 이시민의 편리를 도모하지않고 뺨쓰는 그노선에 다니지않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노선을 맡기 위해서 서로를 경쟁하는 이때에 허가를 받아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시키는 이러한 업자는 즉각 처벌할수 있는가 없는가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업자는 단연코 엄벌에 처해서 노선을 취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길이 나빠서 못다니겠다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길이나빠서 못다니는것은 건설국에서 도로를 한번조사해서 고쳐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가까이 양평동 양남동에서는 뺨쓰운행을 중지하고 있고 또 고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뺨쓰라고 어느 택시회사하고 진짜 모르겠습니다마는 뺨쓰다니는데 뺨쓰는 양보하고 지금 허가도 받지않은 합승을 지금하고 있는것입니다.

결론으로서는 김석근의원이 받아주신다면 이런 무성의한 업자는 즉각 취소시켜 달라는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석근 의원; 좋습니다.)

○김재순 의원; (계속) 그러면 영등포 할당동의 무성의한 업자를 즉각 처벌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강을순 의원; 이제 김석근의원이 제안하신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운수행정에 있어서 맹점이라는것을 건설국장내지 관리국장……. 당무자에 말씀안들일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고하면 일거일동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운영면을 정말 되먹지 않았다고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이건의에 있어서 이해하실 줄 믿읍니다마는 좀더 제안하신분이 건의안에 문안이 없기때문에 건의안의 골자를 알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해서 김석근의원의 안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건설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건의안에 토대를 김석근의원이 제안하신 것과 김제윤의원이 한것을 골자로해서 건의문안을 작성을해서 집행부로 이양할것을 전제로하고 본건에 있어서 토의종결을……. 다른 의원께서 발언하실분이 많을줄압니다마는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려고하니 발언하실분이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본의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를하는데 조건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 제안하신분의 그러한 골자로서 성안을해서 보내도록 하는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재청입니까? 재청으로서 강을순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성립되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오후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관리국장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기때문에 이것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거하나만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속건물 개축의 관…….

4. 경기여자고등학교부속건물개축에의한철거에관한건

○교육위원회관리국장;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속건물 개축에 관련된 철거건물에 대해서 철거이유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경기여자중고등학교는 현재에 여중이 18학급 고등학교가 21학급 그래서 모두 설흔아홉 학급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교실이 설흔셋이기때문에 부족교실이 여섯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여섯 교실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경기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건평 171평의 2층공크리트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든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속건물은 4250년 약40년전에 건축한 목조건물인데 그것이 건평이 57평인데 대부분이 부패되었기때문에 비가 현재새고 도저히 이이상 여러가지 위험한 관계도 있고 하기때문에 놔둘수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여섯 교실을 갖다가 건축코저 하는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 설명드립니다.

○부의장 이행득; 문교위원회 재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 본건에 관하여 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합석해 가지고 심의한결과 방금교육위원회에서 낸 그문제를 적당하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잘참작하셔서 양위원회에 의견을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김재순 의원;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자세한 제안설명과 재정위원회 문교위원회 양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신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속건물 개축에 의한 철거에관한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찬성이요」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김재순의원에동의 재청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있읍니다」하느이 있음)

○강을순 의원; 문교와 재정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신것으로 인정합니다만은 안건을 처리하는데 간단히 넘어가는걸 본인도 찬성합니다마는 그러나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 예산상 어떠한 과목에서 철거를 하는지 예산의 과목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이것을 하나 규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문제를 먼저 예산과목을 어디에다 두고서 철거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관리국장; 철거에 대한 예산문제를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교실 신축과 철거는 경기위원회에서 하는것입니다.

시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제윤의원에 동의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오후회의를 두시에 속개하기로하고 오전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 05분)

○부의장 이행득; 재석의원 24인으로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4290년도 주택건설에 수반한 주택건축자금 기채에 관한건」을상정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하느이 있음)

○김상흡 의원; 회계검사 처리위원회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에 박수형위원회에 김경원의원 문교위원회에 신사회의원 내무에 강을순의원 사회보건에 최인호의원 건설에 김종남의원 이렇게 여섯분으을 처리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집행부 제안설명들어갑니다.

5. 단기4290년도주택건설사업에수반한주택건설자금기채에관한건

○주택과장 주채현; 주택과장을시다.

실은 사회국장께서 말씀해야 할터인데 방금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셨으며 회의가 끝나는데로 나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변변치 못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4290년도 주택건설사업에 수반한 도시B형 주택건설자금으로서 7천5백만환을 기채를함에 있어서 개요를 말씀한다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A비형이 건축하게 되었는데 우선B형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도시 B형 9평짜리를 건축하여 그것을 한호당 25만환식 보조해주어서 각자 자기대지에 건축하도록 하되 조합을 구성하게 조합원이 연대책임지고 5년간에 상환해 달라는것이 정부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백호가 배정되었습니다.

3백호를 각구청장 책임하에 배급을 구성하되 구청별로 20호 혹은 30호 60호까지 할당했습니다.

이 자금은 벌써 재무부를 통해서 산업은행에 영달되었으니 저희도 하루빨리 찾아다 쓰라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7천5백만환의 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사회과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목 의원; 박승목이올시다.

본의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 있어서 합의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만은 서울특별시장의 대행해달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에 본다면 정부방침대로 그대로 인쇄한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사회보건위원회나 재정분과위원회에는 그대로 무수정통과를 보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할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시장이 참작해서 각아홉구에 할당했을 뿐이지 그이외는 정부가 정부방침대로 그대로 프린트한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본건은 그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한가지 말씀할것은 원칙은 이달중으로 돈을 찾아가라고하니

본회의서 결의를 보지못해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각구청에서도 신입이 되어있고 집을 살분들이 선정되어 융자받을 대기중에 있으니 한시바빠라도 본건을 그냥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짓는방법은 없어요」하느이있음)

짓는방법은 아까 말씀들인대로입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십시오.

○노승환 의원; 노승환이올시다.

본건에있어서는 여러의원이 상세히 잘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방금 제안설명과 동시에 말씀한바와같이 7천5백만환을 기채해서 5년간에 상환한다는 본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의원의 찬성 얻고저해서..... 양해하신다면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이의없습니까?

○홍순우 의원; 잠깐 여쭙어 볼것이 있는데 7천5백만환을 서울특별시에 기채하는데 5년간 년부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상환재원은 어떠한지 서울특별시에서 시비로 5년간을 내는지 보조해준 사람에게 어떤계획하에서 하게되는지 어쩐지 알수 없으니 알아야겠습니다.

두째는 왜 사회부장관하면 사회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가옥에 대한것을 기채해서 하면 간단할터인데 어째서 지방장관명단도 기채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답변을 듣자는데 이의없습니까?

○주택과장 주채현; 주택과장입니다.

방금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한바와같이 상환방법은 어떠냐 하는것인데 본자금은 귀속재산 처리적립금에서 정부에서 10억환을 책정해서 각시도에 책정한것입니다.

상환방법은 각주택조합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20인 한도로해서 20인 이상이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조합원에 주택을 짓게 아홉평을 한도로 해서 진데 자기 재력이 집을 짓는데 25만환가량이 부족하다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주는것입니다.

이자는 1할2분로해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본징수에 있어서는 대단히 만전을 기할수 있을것입니다.

(「조합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가부를 물으세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노승환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있음)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시유재산취득의건

○노승환 의원; 노승환이올시다.

전번 회의당시에 본안건에 대한재산취득문제가 여러의원의 절대한 성원내지 막대한 성프로서 차기회의에 기채할것을 말씀하고 전기회의당시에 철회한바 있습니다.

여러의원이 잘아시다싶이 마포구신공덕동에 제1동동사무소 결정용지 매수에 있어서 그전체평수에 81평중 50평정도를

사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집행부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심사 위원회내지 각은행에서 사정한 결과 제가 제출했던 가격이 타당하다고해서 가격문제와 동시 전기말씀한 바와같이 지금 신공덕동 1동소재지라는것은 지역상 그 동내에 있어서 아지못하는 도화1동이라는 소재에 가있기때문에 대내적으로 대단히 난관에 처해있고 대외적으로 피차 불온한 언사까지 하고 있는것입니다.

오늘 이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의원이 선처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50평 평당 9천환식해서 45만환입니다.

가격보다도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있어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사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의원께서 선처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집행부로서도 그러한 애로와 그러한 사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행득;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좀 들읍시다」하느이 있음)

○홍순우 의원; 벌써 이의안에 대해서는 논의한바도 있고 그때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논지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논지가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조치가 없다해서 부득이 반환조치 않을수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其後에 있어서 어떤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나 집행부당국이 나와가지고 예산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추가 예산을 내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내놓 때는 서류의 불비로 말미아마 서류에 불비가 있다든지 해야 할것입니다.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부에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43만환이라면 가격등은 적당하나 수속절차상 예산조치가 없기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인것입니다.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합시다」 하는이있음)

○부의장 이행득;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합시다.

○회계과장; 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사무소대지 6백평에 대하여는 저희들 집행부 형편이 좀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대지가 필요하다고해서 요구한것과 사정과 살수있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조치로 하는일이 먼저되었다면 문제없는데 재산사무가 먼저되었기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꼭사야겠다고 인정해주신다면 살수있도록만 만들어놓고 예산조치는 다음에 있어서 해라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할수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있으면 하고 나중에 예산조치를 해라 하는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라하는것만 승인해준다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것입니다.

○홍순우 의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도 좋습니까(조건부로) 우리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집행할수없는 예산을 갖다가 의결한다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예산을 내놓때까지 만약 추가예산이 언제올려올지 모르니 이것을 해놨다가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예산이 안올러온다면(2-3월후일때) 가격변동이 있다면 다시 그금액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책이 있는지요?

○具喆會 의원; 具喆會을시다.

꼭 의사진행의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본건 시유재산 취득문제에 대해서 구지말씀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특히 노승환의원 선거구역인 까닭에 우리시 행정에서 있어서 말단기관인 동회에 사무집행상 부자연성을 제거해 주기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의장에게 묻고싶은것은 오늘의사일정에 있어서 배열이 다 되었습니까.

긴급동의안까지 상정이 되었다면 회의 개최 벽두에 무슨 긴급동의안이 왔는데 어떤것을 의장의 주권으로 의결 의사진행을 한다든가 채택해서 집행해야 할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의장께서 너무나 재량을 발동해서 중도 난방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있다는 점을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집행부에게 묻고싶은것은 시유재산의 취득은 집행부에서 요청해야 하는데 오직해서 노승환의원께서 제안을 해서 설명까지해야 하게한 무성의한것이 어디있는가 아까 회계과장 말씀이 예산은 회계과장하고 집행은 사계과가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문제는 마땅히 내무과에서 나와서 해야할터인데 의사일정이 이상하게 되어서 그것을 승인할수없고 우리 법정예산에 집행에 위반이되게 하는데…….

의사진행상 본다면 그러면 의장도 그러한면을 잘고찰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의장이 시행정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하는데 절차와 체면을 갖추어 주어야겠습니다.

마치 의원은 의원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는감이 있습니다.

○김경원 의원; 이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차기회의로 넘기기로 되었기때문에 다시 노승환의원이 들고나온 것입니다.

특히 노승환의원이 자기출신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차 부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아까 노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동사무실이 자기행정구역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다른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동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점 여러분이 양해하셔서 아까 집행부에서 회계과장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사는것은 전제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나오도록해서 예산조치가 완전히 있는 방향으로해서 취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요」하느이 있음)

○강을순 의원; 이문제 있어서 김규원의원께서 규칙발언까지 있었고 또 차기회의에 돌리자는 의도가 뭐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상조치가 없기때문에 반려한후 예산조치를 한다음에 의회에서 통과하자는 취지에서 차기회의에 넘어갔던것입니다.

이것을 동의로 해준다면 내무위원회라는것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예산상 서류미비상 반려했는데 그동의를 제가 충분히 설명했었습니다.

이것을 본의회에 내놔서 통과한다고보면 상임위원회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 이러한예를 남겨둔다고하면 차후에 문제가 여러가지 나오게되고 이견만해두고 단건은 안할수 있냐말에요.

또 내출신구에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조치상 대지가 살수없기때문에 내가 애기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그것도 내가 의회에서 요구하면 안통과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가결된다면 내무위원회라는 명칭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내무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리를 했다면 몰라도 정당한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그것을 꺼올수 있어요.

또한 의장께서도 지난번에 두건인데 이번한건만 말씀하시는데 요건만 끝내고 앞으로 또한가지 동의할것인지 명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이 만약 원의로 통과된다면 내무위원회고만들 용의가 있어요. 너무 두서없는 말인것 같습니다마는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본의원은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들이겠습니다.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타당한 이론이라고 봅니다마는 11조의 나항을보면 15일이내에 15인이 동의하면 상정할수있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구애안받는다라고 봤고 또 전번회의에 차기회의에 예산조치될 것을 한것보다 차기회의라고 했으니까 상정될수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원래 예산세울적에 무계획적으로 했다는것을 이제 지적할라고 합니다.

동 예산시설비를 세웠으나 그것을 설비할수있는 바탕에 대한 대지는 안했어요. 내가 동장을 내놓고 시의원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재산이 교통부재산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명도령 수삼차 내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해서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과장이 이런전제를 했습니다.

예산조치를 추가예산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매수한다고 한 것입니다.

동의도 그요지였읍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것 해명해 들이겠는데 동대문구 청량리도 포함되어있어서 두건이 다함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사회 의원; 이 재산취득문제에 있어서 본건이외에 다른 건이 있기때문에 저도몇군데 알아보았읍니다.

회계과관리계가서 알아보니까 동정비 시설비에 2천여만원이 현재 사무상으로는 예산의조치가 있습니다.

또 관리계에 보니까 재산비시설비에 예산조치는 있지만 이 건다 어디어디 다 지명이 되었다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재산취득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사거나 대지를 취득하거나 결과적으로 시재산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관리계로서는 시설비에서는 어디어디 지명이 되었기때문에 동사무소대지를 매입할수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시정과에서 알아보니까 그천여만원의 시설비가 있지만 현재 각동에 편성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시정과장한테 직접말씀을 못들었읍니다마는 계원한테 들었는데 이사정을 알아가지고 각동에 2천여만원을 ○으며 가장 시일이 요하고 신경동일동 대지보다 더시급하다면 문제로 저도 그렇지않다면 가장 시급을 요하는 이 러한데로 돌리는것이 어떻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포구에도 현재 동사무소가 없어가지고 집을 내쫓길 형편

입니다.

어떤건물이 나서 계약중인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시정과장한테 그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뭐 물을것없이 가부묻겠습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具喆會 의원; 우리가 지금 이시유재산을 취득하는것을 승인해주고 넘어가는 과정같은데 전에 우리가 조건을 부쳐놔야 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추가예산을 제출할때에 삽입해준다는 조건하에 승인하는데 각구에 긴급한 실정에 놓여있는 각구청에서 요청해오는 각동의 긴급한 재산취득의 문제도 요와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조건을 김경원의원의 동의에 첨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해준다면 저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나올 용의가 있습니다.

(「개의요!」하느이 있음)

○김재순 의원; 이제 동의한데 대해서 저는 절대반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것을 다시 결의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정말 의사진행상 불법으로 봅니다.

즉 오늘 아까 회계과장도 말씀하셨고 동의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결된다고해서 집행은 결국 추가예산 통과되어야 집행될것입니다.

가결되서 지금 더좋을리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볼적에 추가예산이 나와서 그것이 통과될지 안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물론 노승환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긴급히 사야될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예산나오는 조건하에 승인해준다.

이것은 노승환의원의 말씀에 찬의를 표하나 오늘 이것이 통과되가지고 좋을점이 있다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에없는 것을 사라고 통과한다는것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천추만대의 오점을 적는거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에 예산유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같이 의원으로 말단사무소의 곤경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승환의원님에 감사를 들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심정도 잘압니다마는 추가예산통과할수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예산없는 불법한 재산취득을 어떻게 시키니까 손만들어서 통과되면 됩니까?

47명중에 46명이 통과되서 될지모르지만 깨끗이 손안들은 제손은 여러분을 원망하고싶습니다.

그것을 표결통과한다면 불법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원 의원; 김재순의원 좀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불법으로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이 아닙니다.

장을순의원도 말씀하신것 자기위원회에 대한 위신을 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지 잘압니다.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신지 불법을 자행해가면서 통과할수 있느냐 하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 아까 회계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동시설비도 남아있는데 있고 예비비도 있으니까 이거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무리한 조치를 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따라서 지금 재정위원회 의견이 절차상 나쁜것 뿐이지 여러분이 양해해서 결의하면 불법적인 예산조치를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놈을 조례통과를 전제로 예산통과한일이 있지않어요. 똑같은 일예요. 불법으로 말씀한다면 본의원은 불법을 여러분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불법을 감행해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하신심의는 나쁘다고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해해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발언을 안하고 싶지만 재산취득에 대해서 한마디말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본건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전번에 강을순의원께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러다가 예산조처가 안되었으니까 집행부로 반려하려고해서 반려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면은 우리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치지못한 문제가 가결되면 현지에 나가보자는 것도 그만두었고 실정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긴박해서 제안이될줄 압니다마는 일단 내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본후에……. 청량리동에도 평수가 2백평이올시다.

우리동회로서 2백여평의 대지를 가진 동회 적으리라고 보고 동사무실이라는 것은 운동장이나 기타 불필요한 대지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킬려면 결함된 절차를 보충해서 현지에 내무위원회에서 나가보고 적부를 알은 다음에 승인해 주는것이 좋을것이고 서울시내 26개동이 남의 당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되신곳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차차 순서에따라서

타지역에 있는 동대지를 사무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시의회가 1년가까이 됩시다라는 동재산취득문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알어가지고 90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할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신 동에도 남에땅에 올라앉은 동사무소가 있을줄로 알고 이것은 살라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모든 가격과 실정을 알은 다음에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봅니다.

일단 이문제를 가결되는 방향으로 끌고나갈라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노승환 의원; 본건에 대해서 전차회의 당시에도 장시간 갑론을박이 있었읍니다라는 전차회의당시에 본건에 대한것은 추후차기회의에 돌리겠다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이런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의원의 선처를 빌어야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들인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 동재산내지 동행정을 끌여보시는 내무위원회 강을순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엿읍니다라는 본의원이 소감의 일단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차리에 여러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안들일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또 김동순의원께서 이것을 원활히 할라면 실지조사와 또가격여부에 대한것도 알아보아야 하지 않냐는 말씀도 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미숙한 소감에서 말씀들인다고 하면 작년도에 용산으로 기억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具喆會의원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백여만환의 재산을 산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해서 변론을 하는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3개은행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심사했고 이문제를 다떠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긴급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동회대지 매수문제에 있어서는 불법을 개재했다든가 또 그렇다고해서 매수조치와 예산조치가 병합되지 않는 관계로서 이런 과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책정할수있는 내무국과 이것을 살수있는 조치를 강구할수있는 재무국과 서류상으로 병합되서 이안건이 상정되었다면 물론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매수조치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예산조치가 이런관계상 아까 김경원선배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월중순내지 하순 전후를 통해서 추가예산이 반드시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남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것도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그동의 소재지가 그 동내에 현재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동내에 소속되어있는 관계상 피차 쌍방동회분쟁이 있어요. 이런 사실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전자 회계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대지가 교통부대지였습니다.

사실은 신공덕동1동소재지인줄 알고 사용해 오던것이 교통부에서 그대지를 불하하는 데에서 비로서 알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불법이니 뭐니하는 것을 떠나서 될수있으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수차 요청했습니다.

아까 내무위원회 강을순간사께 말씀드릴것은 내가살고 있는 동리에는 동회가 없다 만일 이것이 중의에 의해서 따른다

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사퇴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피차간에 의원사이에……. 강을순의원한테에도 우수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여러번 주저한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강의원께서는 공적입장에서……. 공적 사적을 구별해가지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의원께서 장시간 갑론을박을 가하고 긴급을 요하는 본안건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들이고……. 좀 우스운 얘기를 들이자면 통사정하겠읍니다.

가급적이면 정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끝으로서 강을순의원에게 대단히 주무분과에 대한 권위를 세우지 못한데 대해서는 차후에 심심이 사과올린것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사람이올시다.

○부의장 이행득; 내무위원회 강을순의원에게 상정절차의 모순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김재순의원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재순의원님은 회계경리의……. 경리법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설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긴급할 때에는 예비비로서의 충용을 할수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상에 명확히 동회대지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양지해주시고 가부 묻겠습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규칙발언요」하느이 있음)

규칙발언 말씀하세요.

○具喆會 의원; 이것 참 죄송합니다.

의장이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예비비로 한다는것을 집행부측에서 요청해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운운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하고 해나간단 말입니까?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회의는 소란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예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사정이 긴박하다는 것을 알고있고 또 제가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들이고 싶은것은 거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제출된후에 교통부관계로 하나 승인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수못하고 그예산이 도로 반환되었습니다.

못했어요. 가격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것이 애로가 많은것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된뒤에도 이것이 단순하게 양되는것인데……. 책정도 안된 문제를 가지고 의장이 김재순의원의 발언을 모르고서 했다는것은 의장이 다시한번 보시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의장이 모르시고서 예산이 책정안된 시설비와 기본재산취득비는 전연 달은것이예요. 시설비는 시설비인 것이고 기본재산취득비는 기본재산취득비인것예요.

어디 재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혼란해가지고 한다.

또 예비비에서 한다는것은 집행부에서 요청이 온것도 아니고 또 재산비목을 혼돈해서 자꾸 의장이 정당한 합리된 발언을 한것을 모르고 했다는것은 이것이 법의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하면 또 이런말씀을 안했어요. 의장이 법에 근거없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위원이 마치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나와 말씀한것을 오히려 의장이 나쁘다고 의장이 말씀하시

니……. 아까도 제가 말씀했어요. 의장이 합의를 진행을 잘못 해서 이렇게 소란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하시니 대단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나쁘다고 지적한것은 아닙니다. 가부문겠습니다.

(장내소연)

(「의장」하느이 있음)

장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장을순 의원; 저 동의하신분에게 이동의가 아마 가결이될 염려가 있는것같에서 만약 동의가 성립된다고하면 이것만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변과목 예산상 사무비 동비 시설비를 없애버리고 지변과목만 없애버리고 한다는것만 인정하면 지변과목만 없애다 그 말예요. 좋습니까? 동의에는 그조건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다음은 재산취득에 관한건입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은 예산조치되는대로 구입하자는 것을 결의하는것입니다.

설명하시겠어요.

(의석에서 ○김경원 의원)

○부의장 이행득;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원 의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동의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추가예산에…….

(장내소연)

좀 가만히게세요. 이번 이재산취득문제에 있어서는 차기추가예산이 나올적에 가격에대한 결정을한다는것은 아까 장을순의원이 말씀했습니다.

그런조건하에 사는것을 여러분께 동의를 얻을려고하는 것

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얹입니다. 미리 돈을지불하고 산다는 조건이 아니고 산다는것을 전제조건으로하고 집행부당국은 지방 강을순 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고 그당시에 매수가 격으로서 추가예산에 올리기로 재산취득을 해주십사 하는것 을 말씀했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가부묻겠습니다.

지금 동의집에서 설명한바와같이 여기 찬성하시는분은 거 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꾀하신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출석의원 29명중 꾀가19인으로 미결입니다.

(장내소연)

○의원찬 의원; 의사진행관계도 있고요. 아마오늘은 꾀회하 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취득이나 혹은 처분에대해서 가장우리가 신중 을 기하지않으면 안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같이 신중론을 말씀하셨는데……. 본의 원은 아까 저홍순우의원의 말씀이 이것이 몇달후에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까지 가지않을 것입니다.

아마 8월중에 임시회의가 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간에 가격이 오르고 널일이고 할필요도 없는것을 생각하고 또는 뺄도 먼저 맞는 사람이 어떠냐는 격 으로 말씀에요. 다른 동회에도 급한문제가 많이 현재 놓여있

지만……. 노승환의원이 가장 먼저이것을 들고 나와서 타구역에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뭐해 달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조치가 되지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는 예비비로 지출할수 있다하지만…….예산이 아직 양정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공기를 대개 판단하건데 이것을 지금 뒤죽 박죽이되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논의말씀을 할것같으면 약혼합시다. 약혼을 해 둥시다. 약혼을 하는것을 승인하고 혼인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집행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가지고 요다음 회의에다가 결의를 얻도록 이렇게해서 모처럼 노승환의원이 애쓴 그것에요. 타구역에 있으니까 곤란하다니 이것을 해요. 우리 혼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에요 하는만은 우리가 결정해주고 집행은 나중에 예산조치를 취해가지고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끝을 말이고 동의종결하도록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가부다시묻겠습니다.

김경원의원의동의 가하신분은 거수해주 기바랍니다.

동의에 가하신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부하신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신분…….

(거수표결)

내리세요. 재석의원 31명중 가16명으로 동의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변경긴급동의……. 이안건은 흑석동 공인시장조합장 분영주 외 93명의 탄원의 건입니다.

또 2에는 흑석동 마중연의 93명의 진정에 관한 이두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것을 먼저해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상정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것은 서울특별시 공사의 도급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대차운반에 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정동의를 김규원의원의 11명으로서 조정동의를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안건에대한 그독회에 들어갑니다.

조정동의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공사의도급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대차운반에 관한조례개정안

○김규원 의원; 조정동의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의 제안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동의를 이갑수의원의 8명과 또일부 김준식의원의 4명과 본의원이 수정하려고하는 수정안과 병합을 해서 수정하기로 합의를 본것이올시다.

수정을 할려고하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중 19조 1 2항은 그후 찬성합니다.

제3항부터……. 제3항은 낙찰이될 입찰이 없을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거나 또는 직시 재입찰에 부할수있다. 제3항이올
시다.

과거의 현행조례는 얼마 앞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4항에다 제1항 단서에 경우에는 이 단서
라는것이 이번 재정위원회의 제출한 100분지60이하의 입찰
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이 100분지60의 경우에는 다시기한을 정하여 시행하되 당
초 입찰참가자중 예정가격과 60%이하에 해당자는 해당 사건
에 입찰을 상실한다.

이것을 제4항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즉 60%이하의 입찰을 한사람은 그사건에 한해서는 입찰을
다시 재입찰을 시킬때에는 자기가 자격을 상실한다는 그것입
니다.

그것은 왜 삽입을 했느냐하면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것 같
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를 100분지60 운운하고 넣은바에는 그것을
明證해서 넣은것이 좋지않을까? 만일 이러한 삽입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하면 가령 1천만원을 입찰해 넣을때에다

백만원이나 넣가지고 그사람이 자꾸 그입찰을 방해할수 있
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지 문제는 그런경우에 이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어할수있다고 하지만 60이상이라는 것을 넣을 바에
는 명문을 넣은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넣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37조는 이번재산위원회의 개정안의 전부를 찬
성을 합니다.

그다음 제43조 제48조 제49조는 현행법을 찬성하고 재정위원회의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어쨌든 현행법을 우리가 찬성을 하고서 이번에 개정안을 반대를 하는고하니 우리가 이42조 48조 49조라는것은 우리손으로 금년2월달에 겨우 통과를 본것이올시다.

2월달에 통과를 보고 불과 그동안에 전연 말하자면 배치되는 이것을 내놓는다고 하는것이 너무 우리의 권위를 잃을 뿐이고 그야 우리가 잘못된것을 발견하면 단시일에 시정할수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손으로 만들어놓고 고칠려는 우리의도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혹은 공사업자를 갖다가 너무나 가혹하게 해놓고 우리라하는 것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보기간이라는 결국은 이소위 담보기간은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완료했으면 완료한날로부터 6개월이라든지 혹은 1년이라든지 재수리를 요하는 이런 그공사를 갖다가 6개월이나 1년동안에 생길 경우에는 그업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담보기간입니다.

이 담보기간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에 보증금 받은 것을 이준공만하게 되면 담보기간 전이라고 내주라하는 이것이 재정위원회의 개정안의 골자이고 이번에 이수정안을 내는 사람의 의도는 내줄 필요가 없소 그것에요. 현행……. 우리손으로 만들어 놓 이조항에는 내어주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내주자하니 우리 말하자면 담보기간이라는 이런 제도가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이것을 내주지않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또 어그저께 김석근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그업자를 고토이는 이런 말하자면 방법을 우리가 이행위를 감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설명하시는데 업자에게는 조금 괴로울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업자 일부에게 동정을 해서 만일에 경우에 이 담보기간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난 이것을 업자자신이 책임을 못질때에는 피해는 시민이 입어야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소수의 업자를 동정해서 많은 수의 시민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실지를 알아보니까 소위 보증금이라고 하는것이 명칭은 1할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지는 ○ 할도 못되는것에요. 어찌 못되느냐하면 그러면 예를들어서 1천만원공사라고하면 보증금이 1할이 백만원이니 이거 백만원을 현금으로내면 완전히 1할이되는데 현금으로 내지않고 국채로낸다 그것에요. 국채로내면 이 백만원의 국채는 최근 얼마정도로 살수있느냐하면 제일저렴한 이 제10회국채는 2할이면 살수있어요. 그러면 백만원 액면의 국채는 20만원에 살수있다 그것에요. 그러면 바꾸어말하면 1천만원에서 계약이 성립이되었다고하면 여기에 보증금이라고하는것이 실지는 2천만원……. 2분에 해당하는 이보증금으로서 충당하고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20만원이라고 하는것과 1천만원이라고 하는 공사와 비교를 해볼때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대○한 차이가 있다고됩니다.

그런데 이것이공사가 가령 준공되어가지고 담보기간전에 내준예와 또 내주지 않은 예를 두가지를 집행부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어떤것이 더 집행하기가 용이하게 더말하자면 일하기가 쉽습니까 물어보니까 과연 이담보기간에 말하자면 보증금이없는 이러한 시설에는 과연 무슨 사고가 났을때에 처리하기에 대단히 힘이 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금년 2월 이후에는 역시 이보증금이 1천만원중 겨우 20만원에 해당하는

는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때의 성의보다 낮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온 우리들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제쳐놓고 이소수의 업자를 위해서 1천만원공사하는 사람의 2천만원이라하는 금액은 극히 고통을 느끼실만한 금액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동정해서 이것을 만약에 담보기간중에 무슨 사고가 생길때에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말하자면 보증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편리하고 용이하게 할수있다.

이것을 구태여 우리손으로서 이것을 하기어려운 방면으로 끌고나갈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때에 본의원이 더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점을 능히 판단하시리라 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만약에 이것을 백보를 양보해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동정을해서 보증금을 준공되는 대로 내준다고하면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생길때에는 어떻게 하겠소 물어보니까 보증금이 있지않소 이렇게 얘기를한다 그것이에요. 또는 보증인이 없다고하드라도 여기말하자면 그지명권을 잃는다든지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하드라도 장기의 무엇은 얻을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능히 제재되지 않느냐 마 우리듣기에는 석연치못한 대답을 하는데……. 보증인이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책임진 사람조차 이행을 하지않었는데 보증인이 대신책임을 이행한 예가없다. 이 보증인은 기어히 책임이행을 시킬려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을 할려면 이해나 3년이 걸릴지 모르는거예요. 그러한 우리한테 조금이라는 해가 전연 없다는것을 생각해서 업자에게 1천만원공사에 불과 20만원정도의 과히 많다고 볼수 없는 이런 금액을 왜우리가 구태여 줄려고 하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자명한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수정안에 많이 찬성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이행득;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본의원도 수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몇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개정안을 가지고나오신 재정분과위원 여러분도 담당한 연구는 하셨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일면 이사람이 생각해볼때에 이개정안이 160만 시민에게주는 여하히 개정함이 유리하나 개정하지않고 우리가 당초116만시민을 위하는 근 40억이라는 거대한공사비를 유효적절하게 공사를 할수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미처 집행도하기전에 이도급업자들의 청원서가 들어왔다고해서 도급업자의 청원내용을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160만시민의 이익을 보는것보다 그도급업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것이 아닌가 이러한 감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릴것같으면 아까제안 설명에도 다소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예산당시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부유층을 두둔하는 서울시의회다..... 차량세 문제가 있었읍니다..... 당시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옥세는 우리서울시내에 가옥을 가지고있는 20만한테 받아가지고 160만 시민에게 골고루 이로운데에 쓰는

것과 우리가 서울시민의 일부분인 4 5천명에 받아가지고 160만 시민이 유용하게 쓰는것과 어디가 160만을 위하는데 쓰는것이나 하는것으로 지극히 반대했던 사실이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대수의……. 손이 부족한 관계로서 본의원은 여기에 만전을 보지못했던 사실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의 백명이나 2백명의 도급업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여기에 하나 하나 나타나있다는것을 우리는 알아야할것입니다.

가량 공사된 부분이 10분지9 찾아 가겠다는것과 시로서는 현행 조례에 10분지8이내에는 못하겠다는 것과 어디가 누구를 위하는 하는것이나 말예요.

도급업자가 도급업자 자신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찾아가겠다는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으로서는 될수있으면 더주고 책임감을 충분히 도급업자에게 주겠다는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예만 보드라도 도급업자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고 규정 아니지을수 없는것입니다.

또한가지 가령 보증금에대한 문제만 하드라도 공사를 하고 나면은 즉각 반환해야한다 이런개정안인데 여기에 현안은 1년동안 책임 기한이있으니 이책임기한내에 줄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왜냐할것같으면 실례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남대문 서부터 서울역까지 인도포장이 작년엔 준공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인도라는것이 인가로부터 차도로 경사가 져야하는것입니다.

그래야 비가 오드래도 물이 인가쪽으로 흐르지않고 차도로 흐르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공사자체가 잘못되어서 집으로 반대방향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을 그 주민들이 이러한 공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본의원한테 차저왔습니다.

본의원은 즉각 토목과장한테 차저가서 공사를 어떻게 검사를 했느냐는것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은 뒤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방은 동절이라 다시 뜯어 고치라고 할수가 없습니다만은 금년 해동할것같으면 고칠수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근에 한두달전에 고쳤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것만 보드라도 보증금을 들어야만 실권을 질수있다 그말이에요. 서울시 도급업자의 100명이나 150명 이내의 도급업자의 실권을 보증금을가지고 서울시 160만의 행정을 하는시장이 보증금을주고……. 실권을 주고 너의 책임을 이행한 뒤에 내주겠다고하는데 무엇이 손색이 있어서 이문제를 도루반환하자 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것이예요. 그러한 등등으로서……. 어느분은 그러면 그 검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검사원에게 책임이 있지않느냐 즉 집행부에 책임이 있지않느냐 이런말을한분이 있어요. 천만환당이에요. 오늘날 공무원이 보증금을 받지않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수정을 시킬수없다.

개설을 시킬수없다 하니까 분명히 잘 안하겠다는 이러한 공무원만이 오늘날 서울시 행정부나 전국에 있다고 할것같으면 이러한 조례조차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제도가 보증금을 줄것이 있던 없던 아까 여러의원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검사할수 없는것을 검사했다는 것만 보드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흑막이 있지않으나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것을 보증금을 없애므로서 이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말씀이 안되는말씀예요. 그러니 이러한것을 보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예를들어 例擧하여 보드라도 이문제를 우리가 초창기에 160만 시민의 이익을위해서 한다면 조례가 나는 가장 타당하게 되었다고보는데 이것이 집행도 하기전에 개정안이 나왔다고하는 자체는 물론 일리가 있는것이라고 믿어집니다마는 여러시민을 위하는것이 아니고 개개의 도급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는것이 되지않을까 생각을해서 신문지상에 나타난 바와마찬가지로 부유층을 위하는 서울시의회인가 도급업자를 위하는 서울시의회라고 다음에 문제가 나는 신문지상에 나지않기 위해서라도 이문제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행득;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본의원은 개정안에 찬성을하고 아까 김규원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안에 일부찬성을 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전에 이개정안이 나오게까지된 동기는 이것이 현행업자의 청원에의해서 이 개정안이 나오게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의해서 이런개정안이 나왔기때문에 일부업자들을 위하고 다소이익을 무시하는 이런동기에서 나온것이 아니냐 이런論을 몇의원께서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한 논에는 본의원생각에는 다대수 이익의 변동 내지 별다른 영향이없는한 소수 이익이라고해서 무시할수있느냐 나는 이러한 생각을해보는것입니다.

일부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대수 시민의 직접적인 이익이 거기에서 손해가 되다고하면은 있을수없는 일입니다마는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없는한 일부 이익이라도 우리가 도모해야되겠다고 하는것이 우리 의회로서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하는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이업자도 아닌 그야말로 다수사람이요. 또 그 다수사람을 위주하는 거기에 매달린 종업원 기타 가족을 생각한다면 도급업자를 중심으로하는 세대로 그렇게 적은 세대가 아니요 또 그것은 시민의 자격으로 우리가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적은 시민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규정을하는것입니다.

또한가지 우리의회의태도는 항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있기 때문에 시민의 청원을 접수하게되면은 우리는 청원자의 입장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우리의회의 태도요 우리시의원으로서 가질수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청원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에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진지한 관계분과위원회의 토의가 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정안이 나오게된 것이라고 동기를 말씀드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19조 내역에 이것을 현행 조례나 또는 개정안 조례나 이것이 큰 차이는 없는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실적에 2항 단서가있을경우에는 다음에 기일을 정해서 입찰을 다시하되 전에 실격자는 그입찰에 참가할수가없다 하는것을 명문화시키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대단히 좋은말씀이

라고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이것이 60%라고하는 제한을 해냈다고 하면은 제한에 위반된 사람은 차후에 입찰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입찰이 박탈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명문을한다고 하는것은 이의가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다음 37조에 중간에 청구를하고 지불을하는 것이 10분지8로 우리가 과거에 조례를 제정했던것입니다.

과거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본의원이 그때언급한 바도있읍니다마는 10분지8이라고 하는것은 서울시에만이 제정되고 서울시로서만 특별시 제정된 예를 떠난 하나의 규정이었던것입니다.

10분지8 청구하고 10분지8을 지불하는 경우에 이러한 근거가 서지않는 것이예요. 왜그런고하니 1천만원에 있을했으면 천만원을 찾아가야하고 천만원 지불할 의무가있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업자가 착실하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기 어렵다고하는 업자의 부정을 견제한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2할이라는것을 남겨두는것이 좋지않느냐 하는데에서 이러한것이 나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하면 천만원 찾아가야하고 또 내 주어야 할 경우라야 올은것입니다 마는 하나의 업자의 부정을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안할수없기때문에 1할 정도의것을 우리가 억제해 두는것이 기업주측으로서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므로써 9할이라고하는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정부기관 기타 개인 기업주까지라도 10분지9라고 하는것이 오늘날 도급업측으로 제정이 되었고 하나의 조례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만이 여기에서 8할이라고 의외의 조문을넣어서 통과시켰던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할이라고하는 이러한 문제가 업자측으로 보아서 많은 이해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업주측으로 따져본다면은 2할을 다내주나 더 내주나 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안되는것이고 어느때 내주어도 2할 다 내주어야할 성질의 것이기때문에 기업주측으로 볼때에는 하등에 직접적인 그런이해 관계가 없는것이지만은 이것은 업자측으로 보면은 1할 이라고 하는것은 하나에 큰 이해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요지음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상태에 있어서 이도급업자에게 막대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있는것입니다.

당연히 공사가 준공이되고 당연히받어야하는 그러한 공사비를 받지못해서6개월 1년씩 끌여가는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보는 이러한 사정에 있기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업자의 의욕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내놨다고 이렇게 규정하므로서 이개정안을 반대한다고하는 이유로서 삼는다는 것 타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사례나 또는 이렇게 만들었다고하는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9할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본의원은 37조에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보증금을 억제한다는 문제보증금을 담보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중에 이것을 억류한다 이런얘기에요. 이것역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론적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도급업자와 서울시와의 사이에 하나의 계약이 성립이되어
가지고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
면은

○부의장 이행득; 지나간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미달이될 우려성이 있으니 의원여러분 각자자리를 뜨
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표결시간이 아니기때문에 토의에 대해서는 과히 지
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미달이되면 유회하겠습니다.

○조영석 의원; 줄거리가 달라졌읍니다마는 의사진행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미달되면은 표결을 하지않는 이상 토론은 할수있다
하는 견해로봐요. 성원미달이 되는것에는 말을하면 할수야 있
겠지요. 그러나 그말자체가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성원이 미달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발언하던 것을 중지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지금 성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요」하느이 있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의원진행상 여기에 시방 미달되었다고해서
토론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토론할수있는것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거나 해가지고 성안이 나올때 인원이 부족하
다고 할것같으면 부득이 유회하는것입니다.

지금 2층에 있으니까 내려오시라고 믿읍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부의장 이행득; 이갑수의원에 말씀에 이의없지요.

○조영석 의원; 본의원이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지못한데서 발언을하면 그발언이 법적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합니다.

제가 말하려 하면 할수있는거예요. 말할수 있지마는 말해서 법적효력이 나느냐 않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이 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원이 안되면 제가 발언한 그발언 자체가 무효로 법적효력을 내지못해요. 풍설에 지나지않어요. 힘들어서 효력없는 말을 하겠어요. 발언안하겠어요. 성원이되면 하겠어요.

○홍순우 의원; 지금 정족수가 어떻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나라 회의규칙에 있어가지고는 의결 정족수만 규정해있고 의사 정족수는 규정해있지 않습니다.

하므로서 저는 의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표결 정족수가 재석의원 3분의2 과반수가 여기에 표결할 때에 여기에는 표결을 못하게 이렇게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낸 개정안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을 하느냐할것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는 모양같아서 더구나 수정안을 내신분은 무엇이나 할것같으면 48조 규정에 공사 보증금과 담보 보증금이라고하는 이것을 분간을 못하는것같아서 여기에 오해가 계시지않나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증금을 내놓으신 그안에 의할것같으면 첫째 19조……. 이것은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가 내놓은 그안을 찬성을하되 단지 6할이하로 할적에 그사람은 실격자로 한다.

이것이 첫째조건이지요. 그런데 어저께 이것을 제가 누누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6할이하로다가 낙찰시켜서 실격시킨다.

이런때에 그사람한테 벌을줄 규정을 세웠느냐 벌을줄 규정이 벌을줄만한 그조건이없다 하는것을 제가 설명했어요. 왜 없느냐 할것같으면 가령 이것이 예정가격을 어떻게해서든지 계획적으로다가 악의로다가 그렇게 알아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 방해를하겠다든지 이하지만 이것을 갓껏다든지 그공사를 낙찰을시키겠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공식행위야만 그사람을 비로서 실격을 시키겠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예정가격을 모른다고 할수밖에 없다말예요. 서울특별시의 예정가격을 몰라 그것을 자기는 그만한 일을할 자신은 있어 하는데 거기에대해서 벌칙을 실격자로 한다는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8조 3항에 계약 보증금은 담보의 의무를 종료하였을때에 이를 환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담보의무를 보증한다고 할적에 담보 보증금을 제거하지 말라는것을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과 담보보증금과 입찰보증금과 이것은 판연히 성질상 또한 조례의 체계상 구분을해야 할텐데 이것이 담보보증금이 계약보증으로되고 계약보증금이 담보보증금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니 이것을 고쳐야겠다는것입니다.

왜냐 계약보증금은 그만두고 이것을 삭제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다음에 1년이나 2년의 장차 담보 기한내에 보증금은 받지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하는 방안은 어떻게되느냐 할것같으면 계약보증금으로다가 담보보증금에 대용을 집어안넣었다 그말

에요. 만일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차라리 계약보증금을 갖다가 내주지말적에 이것은 담보보증금으로서 명칭을 바꾸라하는 얘가지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확실히 양이라 48조3항을 갖다가 계약보증금은 공사가 종료했을적에 이를환부한다 담보보증금은 담보의 의무를 종료하였을때에 이를 환부한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정하자는것입니다.

그런것같으면 어떻게되느냐 할것같으면 서울특별시 지방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할것같으면 25조에는 계약 보증금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한 후 이를환부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말에요. 계약 이행한후 공사가 끝난 후 이것을 환부하기로 계약금은 되었다 그말에요. 그러니까 담보 의무를 할적에는 계약 보증으로다가 담보 보증으로 명칭을 그대로 말고 계약 보증금을 담보 보증금으로다가 대응한다.

그러니 그문자를 여기서 고치라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한후에 환부하고 담보보증금으로 넘긴다.

취지가 그것입니다.

이런것을 갖다가 모르기때문에 그것은 160만 이권을 갖다가 어쩐다 이런소리가 생기는것입니다.

조정안을 내시는분이 이취지를 잘모르시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렇지않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이조항을 없애놓을것같으면 결국은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담보 보증금으로 말할것같으면 시에서 규칙으로다 하고있는것 같에요. 보증인이 있어야하고 그 다음에 담보 보

증금 계약 보증금을해야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등 이의가있을리가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49조에 대해서 이것을 왜 삭제를 했느냐 할것같으면 49조 말할것같으면 49조에 위약금 문제입니다.

가령 계약을 체결해놓고 그계약을 지연해 가지고 소정 有契內에 안 실행을 했을적에 10분지2를 갖다가 위약금을 징수하고 그럴때에 이것을 따로 규정할것없이 42조에다가 이위약금을 계약보증금으로서 충당할수있다 이렇게 넣을것같으면 49조라는것이 실질상 필요없지않느냐 이얘기 입니다.

이얘기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은 충분히 양찰해주시고 건설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이런데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를 했던것입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조영석의원 발언끝난뒤에 개정안과 수정안의 발언을 교체해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 의원;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보증금을 담보기간중 억류한다는 규정을 말씀드리러가고 중단했었습니다.

이 보증금을 담보의무가 종료될때까지 이것을 억류시킨다는 문제는 역시 업자를 가혹하게 拘身하는데서 나온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업주측으로 보아서는 단행하기위해서 이런조문을 설치하는것이 좋겠다고하는 그런 이론이 성립될수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의 공사를 청부를 하므로써 그 공사가 준공될때까지의 과정과 양상은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하나의 공사를 청부시킬적에 소정에 기한이 정해있는 것이고 그내용의 설계도가 첨부되어있는것이고 기타의 신상서가 첨부되어있는것입니다.

업자를 만약 믿는다고하면 관이 감독원을 거기에다가 파견시키지 않고도 업자를 믿고서 그냥할수있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업자의 성실을 어느정도까지 믿을수있느냐하는 노파심에서 항시 감독원이 현장을 감독하게 되는것이고 감독을하면서 또 공사의 소정시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세밀한데 까지 일일이 그공사현장에 상비해서 공사를 감독하고있고 또그래도 부족해서 사양서나 또는 설계도면이나 이러한것에 명시안된것은 지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서 그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공사를 그렇게 항시로 감독을 하였지만 그것만으로서 공사의 완벽을 과연 확인할수있느냐하는것이 또한가지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 검사라고하는 중대한 과정을 거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공검사라고하는것은 사실상 기업주가 그공사를 업자에게 도급한 계약조건과 설계의 내용과 공사 기한 내용이 과연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하는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수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공 검사를해서 준공검사가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도급업자와의 계약의내용과 사실상 준공이 잘되었다고하는것이 판명이된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할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나가지고 1년이고2년이고 의무기간중에 이것을 억류한다고하는것은 너무나 업자를 拘身하는것이고 기업주가 기업주만의 자기편리만은 도모해서 부

당한 이론으로서 보증금을 억제하는 해석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것입니다.

또한가지 이보증금이라고하는것이 현재 현금이아니고 전부 국채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채로서 충분한데 그러필요까지 없지않느냐 이런문제도 나오고 사실상 문제도 들어갔을적에 이러한 이론도 많이 나올일입니다.

국채라고하는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지고 발행할 경우에는 책임을지고 해주어야만 할것이고 더구나 관을 상대로 하고있는 거래에있어서는 이러한 액수가 어디까지나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합법적인 이런 장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것은 이론상 지당치 않다고하는것을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증금을 억류하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반대 하며 그렇기때문에 이보증금은 억류한다고하는 문제는 본의원은 강경히 반대하는 다른방법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撤濟할 수있고 본의원은 생각할수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이라고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보증인의 연대책임을 물을수도 있는것이요 업자가 여기 등록된사람이니까 등록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권리가 기업자측에 있었기때문에 만일 부당한일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공사에 가담못하게 될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이런것을 구제할수있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현재 자본난에 봉착하고있는이때 이사람들의 사업에 이바지 하게 될것으로 생각해서 46조를 삭제한다는것은 본의원은 찬 동하는 바입니다.

○김규원 의원; 의사진행에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홍순우의원이 나와서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

다.

그러면 홍순우의원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정안을 내 즉 본의원이 수정안을 낸 이의도와 거의 접근한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찬부를 논할필요가 없지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고보니 홍순우의원이 계약보증금은 내주고 담보기간중에 담보보증금은 들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본의원은 구태여 수정안을 내놓지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자는 담보보증금이든 계약서에 담보라는 조문이 없다면 몰라도 담보라는 조문이 있는이상 명칭이 계약보증금이든 담보보증금이든 계약조항을 이행하기전에는 내줘서는 안된다말예요.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담보기간중에 담보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다는것을 재차 확인해주시면 본의원이 다른 동의자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철회할용의가 있습니다.

○김재순 의원; 개정안 42조 「기한내에 도급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에는 그지연일수 1일에대하여 도급금액의 천분의2의 위약금을 징수한다…….」 이것은 현행조례와 똑같은말입니다.

그렇게 「……. 이위약금은 계약보증금으로서 충당할수있다…….」 이 의도가 나는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기일이 지연될적에 그도급금액이 하루에 천분의2씩 징수한다는것은 현행조례나 개정안이나 똑같은것입니다.

거기에 왜 하필 계약보증금으로 충당할수있다는 개정안을 냈냐말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내용을 잘 이해못할줄 압니다마는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계약보증금으로서 충당할수있다는것은 계약보증금 국채입니다.

가령 천만원 도급금액에서 계약보증금 국채로 백만원 냅니다.

그러면 업자위약금이 백만원이라고 할적에 국채백만원 액면으로서 공제한다면 국채액면 실제 20만원밖에 안됩니다.

왜하필 위약금은 국채로 충당할수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부득이 여기다가 현행조례와 개정안에다 위약금을 계약보증금으로 한다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계약보증금이 현금일때에는 좋겠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계약보증금을 넣을필요가 없습니다.

천만원의 계약보증금이 백만원인데 위약하면 지불할금액에서 받으면 됩니다.

의당히 이것은 개정안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백만원 받을적에 역시 국채백만원 입니다마는 실제 서울특별시에서는 금방돈이 필요합니다.

국채 시세 20만원 가치밖에없는것이 아닙니까? 요점을 여러의원이 잘생각하시고 수정안낸분의 수정안과 요는 개정안낸의원과 견해가 조금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보증금도 어디까지나 현금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2조의현행조례를 개정안낸데선 잘못생각하시면 우리는 8할이라는돈은 어느국채상환기간까지 이용못하게 되는것입니다.

또 어느의원이 말씀할적에 서울특별시만 유달리 업자에게 가혹한 처사다 이거 안될말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대로 특별한사정이 있는것이고 다른관청은 그대로 특별한사정이 있는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은 건설 모든행정은 업자의말만 들어서 움직일수없는것입니다.

(「올소」하는이들있음)

그러면 37조에 10분지8을 10분지9로한다.

이것은 수정안에 안들었습니다.

중간에가서 완성된부분을 9할주는법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이컵(단상의컵을 가리키며)을 만들적에 뚜껑 만들었다고 9할주고 병을 잘못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말이지 이점은 개정안낸분에게 개정안낸것에 부득이 반대하지 않을fi고 수정안에는 안들었습니다마는 현재 8할준다는것을 9할준다는것도 너무나 후한 것입니다.

또 49조에 48조의 개정안 이것을 우리의회로서 삭제를 시킨다 차후에오는 책임을 의회가 져야됩니다.

가령 집행부에서는 1할을 담보시키든 2할을 담보시키든 우리가 책정해준 예산내에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너무가혹하니 어찌니해서 미리 내주자 나중에 개축할적에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고 개축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증인이있다고해서 소송해도 몇달 걸리게될것입니다.

이런데 비추어서 수정안낸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이상 말씀이없다고 봅니다.

또 60%라는것은 빼야합니다.

백만원짜리 예산가격이면 40만원만 쓸수도있어요.

한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군부에서 사쓰를 사는데 6백환 예정가격봤는데 어떤무역업자가 2백50환에 넣은적도 있어요. 가령 백만원짜리공사에 50만원에 달랍니다할적에 너 60%미만이니까 하지말라 이런일이 있을적에 어떨것입니까? 개정안낸분도 여러번 심사숙고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규원의원의 수정안에 대폭찬성하면서 이 수정안에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규원의원이 홍순우의원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수정안을 철회할용의가 있다고했는데…….

(「그건 물어볼것 없어요 발언주소」하는이있음)

그럼 개정안에 찬성 김경원의원에게 들입니다.

○김경원 의원; 시방 다이거 좋은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적에 김재순의원이 다른데는 그런일이없는데 서울시만은 이런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토건업자 幾個人을 위해서 개정안낸거 아내요 이거 양해하셔야지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까 김규원의원이 수정안내신데도 19조 백분의60에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그거 넣다고해서 좋고 안넣다고해서 나쁜 거 없습니다.

60%이하된사람은 언제든지 재입찰에 넣지않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초점된 37조의 기성공사에대한 과거 10분의8을 주든 것을 이번개정안에…….

(「그건 수정안에도 찬성입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48조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일전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했습니다.

건설국장도 말씀했습니다.

도급업자에 대한계약이라는것이 언제든지 관청에서 그렇게 하고있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민주주의국가라면 쌍방을 존중하는것이 원칙일것입니다.

계약내용을보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것입니다.

또 일방적인 도를 넘치는 계약을 할수있느냐 그래서 개정안을 내왔습니다.

시방 개정안을 낸것은 제일초점이 아마 양분과에서 생각하신기 다른관공서에서 없는예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것이고 그다음에는 공사를 할적에 계약조항에 위반이 되었을적에는 언제나 도급업자를 제재하겠금 되있는 조항을 최저한 넣고있습니다.

도급업자가 진정을 냈고 양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에 얼마나 이익이 있냐를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백만환 도급공사라면 1할이면 십만환의 국채라면 실제 만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만환받어가지고 공사끝난 다음에 공사가 잘못되었을적에 보증금으로 충당할수 있는것입니다.

충당할수없는 형식적인 보증금을 받아놓기때문에 형식적인것 할필요없다는것입니다.

또 실제에 어제 김석근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국채를 백만환을 걸적에는 실지이자는 백만환에 해당하는이자를 내고있는거예요. 그러면 그건 거치해주면 공사도급 금액받은것만치다 이자묻고 물어요. 그러면 백만환 그렇게 되고보면 아무것도 없게된다는 조건에서 이것은 도로 쥐도 좋다는 것이지 무슨 도급업자를 두던해서 서울시민의 복리를 깎자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지않어도 괜찮을것이라고 생각해서 재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낸것

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장의순 의원; 본의원은 이공사관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어서 확실한것은 모르지만 이조례는 공사의도급 노력의공급 및 물건에매매 대차 운반에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전적으로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데 물건매매에 있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 관에 있을때 계약담당을 한적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이 왜 필요하냐 하는문제에서 담보문제를 삭제하자 두자는 양론인데 아마 재정법규에 있어서 아마 어느나라나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계포에가서 시계를 수리했는데 6개월보증한다고 증명해주었으면 그안에 고장나서 가면 말뚫하고 수리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보증금을 세워두면 공사가 7월말일로 끝났다할적에 그공사에 고장이 생겼을때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로인데 계약을 불이행했을적에 지금과 같은일이 생겼을때 책임추궁할것은 계약보증금밖에 없습니다.

보증인이 있지않냐 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계약보증금은 담보기간을 종료했을때 반환한다 여기에 업자가 제일약점이 있는거예요. 이걸로 의무를 완전히 할라고 애쓰는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담보기간이 종료되었을때 반환하도록 살려야할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한다면 다음에 결함이 생겨도 이것을 사전에 양해해준것밖에 안됩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라도 계약보증금은 의무기한을 통과한다

음에 내줘야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논의할것없이 수정안대로 통과할것을 바랍니다.

○김석근 의원; 김석근이가 토건업자라고해서 업자를 두던해서 한것이 아니고 오늘은 시의원 자격으로서 말씀들이겠습니다.

제가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그목적은 달성시키기 위해서 과도한언사가 있을지모르나 양해해주셔야 하겠어요.

제19조 제47조 이건 개정안이나 수정안과 근사하기때문에 48조3항과 49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집행부를 때리고싶어요. 과거 왜정36년 해방후 오늘날까지 조선총독부령을 법률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할때도 왜놈의말 그대로 번역해놨더라 말예요. 그래서 우리시의회가 새로구성하고 여러날 끌어오다가 이것을 통과했는데 그때 시간이라든지 복잡해서 자세히 검토못했지만 10분의9가 되었지 10분의8은 미스프린트가 되었어요. 38조를 여태안쓰다가 조례가 통과되니까 ○○오고 있으니까 업자가 억울하다고 호소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하냐 하니까 시의회가 이렇게하는것을 어떻게하냐 하면서 시의회를 팔고서 안하는것을 한단말예요 집행부가 이것은 시의회를 일반시민한테 시의회가 시끄럽게 군다해서 시의회에는 어느당이 많은가 다수당을 깎아먹을려는것 밖에 안되요. 우리가 통과해서 보낸안건을 만족하게 받아들인일 있어요. 밤낮 재심해주소 뭐해주소 해가지고 오는데 이건왜 재심하러 오지않고 시민을 압박을 가하는데 왜그러냐하니까 시의회에다 만단말예요. 시의원을 깎으려는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걸 잘알어야되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수의계약이

라는것은 보증금은 면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재무국장이 나와서 과거에 일을 시켜놓고 「하자」가 생겨서 찾아다녀도 없어졌다 해요. 당신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해주는 불신한 사람을 지정업자로 한다면 큰 과오를 범할테니까 앞으로 지정업자 선정에 있어서 건설위원회에 맡기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언이라고까지 합니다.

1년이나 2년 후에 업자를 찾으니까 없다 말이 않되요 그리고 오늘내가가서 계약서를 한장 얻어왔되는데 엄연히 계약보증인이 들어있는데 동업자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계약금을 갖다가 다시 공사가 완료할때까지 담보로하지않드라도 집행부로서는 할일이 얼마든지있어요. 집행부는 칼자루를 들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방법이 많이있는것입니다.

이 방법을 다 말하려고하면 시간이 많이걸려서 말씀을 압드리겠고 또한가지는 이것은 단지 공사라고만 염두에 두지말고 물품을 전에 산다 말예요. 이것을 실적에는 공매해서 보증금을 받고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공사도 완료되게되면 검수해서 말예요. 그러면 검사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것같으면 조애를 실적에 창고에다가 넣었다가 검수를했다가..... 그러면 이것을 1년동안 쓸수있다.

그창고에다가 넣었다 내었다..... 또 내줄수있느냐 보증금을 내주겠다..... 1년동안 창고에 넣어주었다가 변질된것을 누가 내주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동안 보증금을 못내주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이 안걸린다 무엇이라하는것도 우리나라 경제가 꺾박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하려고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신경이 상투 끝까지 올랐어요. 그렇기때문에 전차나 뺨쓰를 타보드라도 조금만 다치면 신경이 예민해서 날카로워져서 싸움만할려고하는 이런판이 아닙니까? 그런때에 하필 물품구입 수의계약 이런데에 대하여 업자들한테 일부업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압력을 가해가지고 고통을 줄것이 어디에있느냐? 그리고 서울시에 1년에 공사가 약40억되거든요. 거기에 국채가 1할이면 4억이됩니다.

이4억을 서울시에서는 한국은행에 저금해주는것이에요. 이것은 사장하는것인데 어저께도 여기에서 말했읍니다마는 ○중변을 1년에 3할을 해준다해도 4억에대해서 1억2천만원환이라는 이자를 업자들이 안내면 안되게되는것입니다.

그럼 업자가 내는데 김석근이가 무엇을 안타까워 하느냐고 하실것입니다만 역시 물건을 만드는데 장차 예산에서 국채비를 갖다가 예금하는 이자를 물건만드는 도급가격중에서 그이자를 뺄려고하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그물건이 완전한것도 못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통부에서는 과거에 영암선 49억 공사 현재 충주에서 공사하고있는 29억6천만원 공사도 심계원과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악법이라고하는것은 없어요 현재 일본에서도 보증금제도 앓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처음에와서 이것을 안했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너무 신용이 없기때문에 보증금 2할5분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해방후에도 이것을 앓했었는데 우리한국사람들

이 서로 믿지않어요. 그렇기때문에 보증금제도가 되어서 오늘 날까지 온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왜놈때 36년 해방10년동안 앓든것을 시 의회가 생겨가지고 도급조례안이 왜말로된것이 비로서 한국 말로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업자를 갖다가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업자들은 호소할데가 없어서 시의회 에왔다 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호소해온것을 일부시민 160 만시민의 일부시민의 일부시민도 시민이라 그말예요. 여러분 계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시의원들을 때려야되겠는데 요것을 갖다가 발견하려고 애쓰고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이 나왔으니 까 요것만이라도 기회를 타가지고 때려보겠다 그것입니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서요 다소간 제가 흥분 되어서 頭痛없는말을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말썸한것은 제가 무슨 업자라고해서 업자를 두둔한다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썸하는것은 과거 46년간 왜놈때부터 앓하든것 을 왜하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계서 참작하셔서 이개 정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려감니다.

○김제윤 의원; 지금야 개정안에대해서는 어제회의에서 수정 안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것으로해서 수정안을 내놓아가 지고 다각도로 개정안과 수정안에대하여 상당한 각기 가지고 있는 각도를 여기에서 충분히 표시했다고 보고있읍니다.

더이상 얘기가 나오면 틀림없는 중복이 왔다갔다하는 그얘 기뿐이에요. 개정안이나 얘기하는 골자가 그 얘기의 표시가 강하게나왔다 약하게나왔다 그것뿐입니다.

그런고로해서 이안을 토론종결을하고 가부에대한 표결에 부치는데대한 동의를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김제윤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다.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김제윤의원의 토론종결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재무국장의 설명

(「필요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가부묻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개정안입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7명중 건설위원회 또는재정위원회의 정안에 가
2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홍순우 의원; 아까 이것이 가결이 되어가지고 결정은 되었
습니다마는 그뒤처리 즉 말하자면 그자구수정이랄지 수정체
계랄지 이런것을 운영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수정과 체계를 갖
다가 형식을 가추도록 하는데에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여러분에게 잠깐말씀들일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올라와있는데 다음 회의에 상정하
기로 산회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차기회의에 합시다」하는이 있음)

(「지금 합시다」하는이 있음)

안건은 흑석동공인시장조합장 방영주의 94인이 탄원서와
피탄원자측 연지시장측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에대한건입니
다.

이것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8. 흑석동공인시장및연지시장에관한청원서심의의견

○한상기 의원; 본의원이 의사일정변경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4290년6월19일자 영등포흑석동공인시장조합장 방영주외 94의 탄원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해당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공사건에대한 조사심의를 종결하고 7월11일자로서 이사건은 경미한 사건이 되지못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본회의에서 이 사건을 처결해야 되므로 본회의에 상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산업위원장의 보고가 의장에게 상정이 되어서 의사일정에 그동안 오를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날 두고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지 못함으로 조사자인 본의원이 의사계를 누차 독려해서 상정하기를 제촉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차일피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는 회의일정이 거진 마주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산업위원장이 의장에게 이 안건을 중대한 민원서류가 되어서 금회기에 처리를 아니하면 수많은 시민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대한 안건이니 임시회의가 종료되기전에 상정을 해주십사해서 의장이 결재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상정이 되지않으므로 이것을 부득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제안설명을 빨리해주세요.

○한상기 의원; (계속) 속히는 어떻게 하라 말예요.

의장은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소…….

그러므로 만약 오늘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차기회의로 넘어가게 되니 차기회의가 언제 열리는

지 알수없는 바고 그동안 수십만명의 시민은 이사건이 신속히 주기에 상정처리가 안되므로 불필요한 고통과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부득불 이렇게 긴급 동의로 상정 아니 해도 될일을 의사계에서 처리를 잘 못 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점을 양해하시고 본의안을 상정시켜 토의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라옵니다 제안설명하세요」 하느이 있음)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실은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수있는것입니다.

영등포구 흑석동 중앙대학인근입니다.

작년 9월7일자로 흑석동시장으로 공인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공인시장은 대지가 천6백60평에 한점포당 3평의 점포가 122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 70개점포는 개점을하고 35개점포는 아직비어있습니다.

이시장을 비롯한 인구는 그인근에 약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유래는 최초에 공인시장에 되지못하므로 하꼬방을 가짓고 무질서한 무허가건축이 산재해서 자꾸 시장을 형성했는데 인구도 늘고 또한 지역적으로보아서 시장이 필요하므로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작년9월7일자로 공인시장으로 인가가 되어서 시장을 개설한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시장 불과 2백매타 거리에 대지 천9백72평 소위 연지라는..... 그연못을 메꾸어서 102점포 매점포 약4평의 점포가 건설되어서 이것이 자연 시장화할 형세가 됨으

로 만약 이것이 시장화가 된다면 요즘은 지역에 공인된 흑석동시장 자체의 유지도 곤란해서 2년이 되었지만 아직 경제적 타격 여러가지 정세로 35개점포가 공점포로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많은 점포의 시장이 필요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위 연지시장 이것이 실제의 시장화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공인흑석동시장은 유지할수없는..... 피차자멸의 결과를 가져올수밖에 없는 이런상태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인흑석동시장조합장 방영주가 94명이 그 인근에 자칭 시장운운해서 여러가지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지 못하는 실제 시장을 개설하고 있는 이행위를 취체해주십시오 이것을 방지해주십시오 이런 탄원서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탄원서와 진정서 두건인데 건수는 두건이지만 하나는 즉 말하자면 공인시장측의 탄원이요 하나는 피탄원자측 연지시장측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까닭에 한사건을 처리하면 두사건이 쌍방적관련이있고 또 동시에 처리될줄 믿읍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에서 이제말씀한바와같이 엄연히 법적으로 흑석동시장이 승인이 되어서 작년9월7일부로 시장인가가 나갔고 그만한 시설을해가지고 시장개업을하고있으니 그외의 시장개점은 필요가없다고보며 또는 일로말미아마 다른사람의 공인시장에 악영향을준다는것은 여러가지점으로 보아서 부당하다는 견해를 가졌고 이연지시장의 시장개설의 그진정건은 당연히 각하를 해야될것이고 흑석동공인시장은 보호육성해야 될줄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형식적으로는 이와같은 흑석동공인시장을 보호를하고 소위 연지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아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약2천평에달하는 연지를 설해서

102점포를 건설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위 시장운영을 영위하는 도중에있음으로 이것을 방임하다가는 이제 공인시장이 중대한 위협을 받겠으므로 탄원이 나온것인데 이제집행부당국에서 형식적 그와같은 태도는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날이갈수록 소위 연지시장의 시장행위를 실제로하고있다 이말에요.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런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아서 너무 효과를 주지못한까닭에 혼란이 일어나고 쌍방이 날이갈수록 감정대립이되어서 마야호로 중대한 사회문제화하고있는 이런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여러가지로 보아서 본의회에서 銳意처리를 바라는바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그러면 왜 흑석동시장은 공인해서 허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은 인정을하지않었는데 어찌해서 이와같은 실제건물이 생겼고 분규가 생겼느냐고 할것같으면 이점에대해서는 참고로 김태선시장때로부터 이분규를 오늘날까지 올만한 원인과 近因이 내포되어서 온것만은 움직일수없는 사실입니다.

집행당국의처사가 분명하지못하고 철저하지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물어물 눈치보아서 일시적으로 ○○해짐으로 이와같은 중대한 뜻하지않이한 결과가 온것인줄알고 앞으로는 이민간의 이권문제에관한것은 그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판단을 내려서 좀 법규에 의지한 단호한 어떤태도를 가지고 이런 분규가 발생아니되도록 취급해야될것이며 주의해야 될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의장! 보충설명하겠어요」 하는이있음)

○김규원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리지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방 모라고하는 사람 이외에 몇사람이 이탄원서 제출한것은 이것은 정당하게 공인시장이 라고하는 인가를 맡어가지고 시장의 건축허가도 맡어가지고 시장으로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앞에 마모라고하는 사람의 몇사람에 과거 김태선 시장적에 그자리가 적당하다고하는 언질은 받은일은 있어어 요. 과거 지난일이고 그후에 엄연히 방씨명의로 공인시장허가를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후에 건축허가를 내준연후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명목을 부친고하니 주택으로다가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는 실지로나가 조사해보니까 점포로 지어놓았다……. 아까 한의원께서는 2백매타이다 그러지만 본의원도 실지나가보고조사해보았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조사를해보니 이것은 거의 접근이되었어요. 접근이되었는데 공인시장허가맡은 그앞에다가 주택으로다가 허가를 맡어가지고 실지로는 점포로 지어가지고 점포로 일부 사용하고있다 말어요. 이러한 불법한 짓을하니 그러니깐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합법적 수속을 밟어가지고 인가를 맡어가지고 시장으로 운영해나가고있는 여기를 어디까지나 법의 질서를 지키기위해서 건축허가를 주택으로 맡어가지고 말하자면 허가조건을 숙여가지고 실지로 시장으로다가 사용하고있는 이것을 앞으로 좀 철저히 단속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히 보충설명해줍니다.

○김인기 의원; 이문제는 작년12월달서부터 이문제가 발생 되어가지고 내려온것입니다.

집행부에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하겠어요. 작년12월달 시로부터 흑석동일대의 청원에 의해서 본시장을 허가해주었습니다.

그앞에 연지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못은 중앙대학을 비롯해서 흑석동일대의 방화수에 중요한 연지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건설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실지 답사해본 결과 그연못은 메워서는 안되겠다는 것에 양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서를 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휴전중에 전쟁이 끝나지않은 오늘날에있어서 수도서울북판에있는 방공호나 방화수에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며 방화수를 만드느라고 하는 찰나에 시당국은 무엇을하고 있는지 나 알수없어요. 흑석동일대의 전체시민이 요구하는 이방화수 저수지를 무자비하게 메웠으며 오늘날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는것은 마땅하다고 지적아니할수 없는것이에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 당시에도 시민이 원하는 바에 의할것 같으면 못을 미우지못하겠으니 경찰로서 조치하겠다 해 놓고서 오늘에와서 연지못을 미우는것은 자유 의사에 맡기겠다해서 건축허가 역시 시장이 중지되는 그당시에도 여러분 우리산업분과위원으로서 도저히 시장으로 용인하지못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명목을 붙여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던것입니다.

나 이것 불유쾌하기 짝이없어요. 다른데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권력없는 사람은 건축을하다가 중간에 구조가 맞지않는

다해서 허가를 취소하기가 비일비재하면서 중대한시장을 건축하는데있어 일개 주택이라고 명목을 붙여가지고 점포를 화한 이것을 오늘날 목인을 해주었다는것은 집행부 자체가 너무나 권력에 아부해서 일을 하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시로서는 어디까지나 시민 전체에게…….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있는 그사람들에게 평등한 집행을 하지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주변 일대를 가볼것같으면 상수도가 완전히 설비되지못해 가지고서 방화에 큰 지장을 일으키니 주변 일대에서 진정을 해가지고 이연지못을 과거 40년동안에도 방화수로 이연못을 유지해왔으니만큼 오늘날에 이것을 갖다가 미우게되는것을 갖다가 진정을 했던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시 세태니 심지어는 가가호호에 방화수를 만드러놓으라 이랬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는 방화저수지를 갖다가 미우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되는것입니다.

오늘날에있어서 저희가 생각할때에 이것이 벌써 진정이 네번째 들어오는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연지못을 미우지말자고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그외에도 연지못을 민 상인측에 의해서 시장화하겠다는 그당시에도 집행부로하여금 우리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시장으로 용인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축행정에 있어서 모순된것을 초월해가지고 이시장 문제까지 야기시켰다는것은 건설국장이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제가 드리는것은 너무나 집행부가 소홀히 일방적인……. 어느 권력에 아부해 가지고 일을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나는 이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내가 이말씀을 안드려도 집행부 책임자들 잘생각해보십시오. 어찌 건축허가 설계도에 있어서 가정주택으로다가 집을진다 해놓고 오늘날에 와서 점포로화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야기시키는 그책임이 어디에있느냐 그말에요. 이문제를 전체가 집행부 잘못이에요. 그런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제견해로서는 도저히 공인시장 근처에 다시 점포를 해준다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여러 의원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최인호 의원; 질의의 요지는 산업분과에서 심의결과에 상정된 설명을 들어보면은 핵심을 잡지못해서 심의한 산업분과에 질의하는것보다도 출신의원인 이기환씨한테 물을려고 하는것입니다.

공인 흑석동시장과 인지시장의 이 양개시장이 공존하므로서 그인근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인지시장을 공인안해주므로서 주민에게 오는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에 묻고저하는것은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나온것을 볼것같으면 인지시장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맡았을적에 주택으로서 허가를 해준것이 틀림없는것으로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후 10통1백20점포를 점포로서 개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개축으로서 허가해준 일이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기에 답변해달라는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건설국장님은 내무부에 긴급한 회의가있어서 참석치못했습니다.

산업국장 답변듣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하나 하겠습니까」 하는이 있음)

○김경원 의원; 인지시장의 허가가 없는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택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점포로서 사용해서 시장행위를 하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의 설계면이 되어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것이 점포로 허가가 되어있지않고 주택으로 설계가 되어있다면 불법이라는것이 나타나있습니다.

특히 과거를 상기해 보면은 흑룡극장도 설계변경했다고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단연코 주택으로 허가해 가지고 점포를 하였는데 설계변경을 하지않었다고 한다면 건축허가에 모순이 있지않은가 이점을 밝혀주시요.

○산업국장; 흑석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하신 의원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분규는 흑석동공인시장에서 약80매타의 지점에 주택허가를 맡아가지고 집단적으로 120호 정도의 집을진드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주택허가로서 집을지어 가지고 시장으로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기실 공인시장측에서 반대하는데에 대해서 분규가 야기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주택으로서 허가를 한 것이고 그후에 점포로서 설계변경 심의한 일이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문제에 있어서 구청장과 관계서장과의 회합을한 일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으냐고 저희들끼리 의논한 일이있습니다.

이문제는 주택으로서 허가한것이지 시장으로서 허가를한 사실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이 점에있어서 서장이 저한테도 확실히 말하고 간일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행위를 할수가없도록 저희로서는 주택으로서 집을짓도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박수형 의원; 문제는 흑석동시장은 하나의 공설시장으로서 시장국도 정식으로 허가해준 시장이고 인지시장은 허가없이 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맡어가지고 불법적으로 행정 당국의 지시를 위반해가면서하는 사설 시장인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방임해주면 시에서 인정한 공설시장이 멸망할 우려가 있으니 철저히 달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당국에서는 흑석동공인시장 진정인들의 의회 에건의한 이내용을 채택해가지고 집행부로하여금 사설시장은 폐쇄시키고 이 공설시장을 잘육성 시키도록 이 건의안을 그냥 채택할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이행득;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재청으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소」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면 박수형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5분후에 폐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7시 40분 산회선포)

폐회식

(폐회식순)

1. 개회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간사장 신용석; 지금부터 제13회임사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배례)

의장님의 식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오늘 제13회 임사회를 폐회하는데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3일간 비록 짧은날자였고 날도덥고 또 여러가지 우리의회생긴 후로 처음되는 또우리가 대단히 감회가깊은 바있습니다.

물론 여러의원께서는 그동안 능숙한 식견좋은 역량과 기타에 정밀히 조사연구하신 결과를 특별히 이번 의사일정에 오른 여러가지 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이행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옛말을 빌어서 이사람 생각을 말씀드리면 求言配命이 自求多福이라 시전에 말하기를 길이 천명에 맞도록하는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천명 즉 인심 즉 바른 민주주의에 맞추어가면 따라가면 자기자신이 많은복을 받게되는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말에 대해서 특별히 느낀바가있어서 우리가 이번 단

기일이지만 이것을 기화로해 가지고 앞날에 우리 의회를 또 이나라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더욱 빛내주실것을 생각할때에 특별히 옛말을 한말씀 빌어서 폐회사에 첨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생각할때에 소홀히 할것이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반드시 천명에 맞추어 가지고 인심에 맞추어 가지고 올바른 민주주의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개인 행사뿐만 아니라 의회에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다는것이 우리 의회를 빛내고 우리의원 자신이 스스로 복을 받는것이다 이것을 의미있게 味했다하면 다행일가 생각해서 잠깐 폐회사에 한말씀 드리는 바이올시다.

의원 자신이 다시 개회가 언제 될는지 기필할수 없습니다 마는 일기도 더워지고 할때 더욱 건강에 주의하셔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제13회 임시의회 폐회에 제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금반 회기에있어서는 연일 혹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운영에 빛을 더하게하는 제반보고 및 중요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신 심의로서 탄력성있는 행정 시책이 날로 좋은 방향으로 되어가지고 있음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충심으로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여러분께서 보여주시 뜻이 행정시책의 실천면에 잘반영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간단하오나 이로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4290년7월26일

고 재 봉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만세삼창으로 부의장님께서 선창하시겠습니다.

(만세삼창)

(박수)

이것으로 제13회 임시회의 폐회식을 마치겠습니다.